

#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심사기준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A Study on improving system of licensing and  
approval for broadcasters

2018. 12

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통융합정책연구 KCC-2018-13

#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심사기준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A Study on improving system of licensing and  
approval for broadcasters)

성욱제/송민선

2018. 12

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이 보고서는 2018년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  
융합 정책연구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  
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제 출 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심사기준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의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년 12월

연구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총괄책임자: 성욱제 연구위원  
참여연구원: 송민선 연구위원





# 목 차

요약문 .....	vii
<b>제 1 장 서 론 .....</b>	<b>1</b>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
2. 기존 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2
제 2 절 연구의 구성 및 방법 .....	5
1. 연구의 구성 .....	5
2. 연구의 방법 .....	5
<b>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해외 사례 .....</b>	<b>6</b>
제 1 절 (재)허가/승인의 법적 성격 .....	6
1. 논의의 범위 .....	6
2. 지상파방송사업의 허가 .....	7
3. 종합편성채널의 승인 .....	13
제 2 절 해외 사례 .....	15
1. EU .....	15
2. 일본 .....	18
<b>제 3 장 재허가/재승인 심사제도의 문제점 및 주요 이슈 .....</b>	<b>24</b>
제 1 절 현 황 .....	24
제 2 절 문제점 및 주요 논의사항 .....	27
1.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지적된 문제점 .....	27
2. 기존 연구에서 지적된 문제점 .....	32

<b>제 4 장 제도개선 주요 내용 및 사전 기본계획(안)</b> .....	<b>42</b>
제 1 절 제도개선 주요 내용 .....	42
1. 기본 방향 및 과제 .....	42
2. 주요 내용 .....	43
제 2 절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안) .....	52
제 3 절 매체별 배점표(안) .....	56
<b>제 5 장 결 론</b> .....	<b>62</b>
제 1 절 정책적 제안 .....	62
제 2 절 기대효과 및 한계 .....	66
<b>참고문헌</b> .....	<b>67</b>
[부록 1] 종편/보도PP 승인/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	<b>69</b>
[부록 2] 사전 기본계획('15년 4. 29, 수정 '15. 9. 24) .....	<b>81</b>
[부록 3] '17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재승인 신청 안내('16. 9) .....	<b>92</b>

# 표 목 차

〈표 2-1〉 회원국에서 적용되는 면허제도 카테고리 .....	17
〈표 2-2〉 지상파방송 면허 및 재면허 관계 법령 .....	19
〈표 2-3〉 지상파방송의 사업계획서 기재사항 .....	20
〈표 2-4〉 비교심사 평가항목 및 평가점 .....	22
〈표 3-1〉 재허가/재승인 심사 기준 현황 .....	26
〈표 3-2〉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심사기준('15. 4)에 따른 개선사항 비교 .....	32
〈표 3-3〉 방송의 공적책임 등에 관한 중단위 항목의 평가기준 현황 .....	33
〈표 3-4〉 방송평가 및 재허가(재승인) 현황 .....	37
〈표 3-5〉 방송평가와 (재)허가 심사기준 .....	39
〈표 3-6〉 재허가 심사 항목의 실적과 계획 구분 가능성 .....	40
〈표 4-1〉 심사점수별 차등화 방안 .....	43
〈표 4-2〉 재허가 심사사항(대분류) 예시-지상파TV .....	44
〈표 4-3〉 심사사항 및 매체별 배점 .....	45
〈표 4-4〉 심사사항 및 심사항목 .....	46
〈표 4-5〉 심사항목 현행 vs 개정(안) 비교 .....	48
〈표 4-6〉 방송평가 중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 평가'-세부항목 .....	50



# 요 약 문

## 1. 제 목

-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심사기준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15년 마련된 재허가·재승인 사전기본계획에 따라 '16년~'17년에 걸쳐 지상파방송 및 종편·보도채널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심사 대비 필요

##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 제1장은 본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전체 보고서의 구성 및 내용, 그리고 연구방법을, 제2장은 재허가/재승인 제도의 법적 개념과 해외 사례를, 제3장은 현행 재허가/재승인 심사제도의 현황, 문제점, 이에 따른 주요 이슈를, 제4장은 재허가/재승인 심사제도의 개선방향을, 제5장은 결론(정책적 제안, 기대 효과 및 한계)으로 구성되어 있음

## 4. 연구 내용 및 결과

### 가. 재허가·재승인 대상

연도	지상파 텔레비전방송 지상파 라디오방송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종합편성· 보도전문 방송
19년	12월(지역MBC 13개사, 민방 8개사 등 33개사)	12월(안동MBC, 광주방송, TBC, G1, 제주방송)	-
20년	12월(KBS, MBC, SBS, EBS, 지역MBC 3개사 등 10개사)	12월(KNN, 수도권KBS, MBC, SBS, YTNDMB, 한국DMB, 유원미디어)	3월(YTN, 연합뉴스TV) 4월(TV조선, 채널A) 11월(JTBC, MBN)
21년	12월(CBS, 극동방송)	-	-

- ※ '18년도 재허가 대상인 지상파 라디오 방송(국악방송, TBN) 및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지역KBS, 대전방송, 춘천MBC 등 7개사)은 허가 유효기간 미정
- ※ 공동체라디오FM 7개사(관악, 마포, 성남, 성서, 영주, 광주, 공주)는 '22년도 심사 예정
- ※ 지상파 초고화질(UHD)텔레비전방송은 특수성에 대한 별도 고려가 필요하므로 대상사업자에서 제외

### 나.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자격조건에 적합하고, 심사대상 사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자가 없는 인사 9~15인으로 구성
- 구체적인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은 당해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세부계획(안) 수립 시 결정
  - 심사위원장은 상임위원들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이 결정하고,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

구 분	분 야	비 고
심사위원	심사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또는 외부전문가
	방송·미디어 분야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법률 분야	변호사 또는 법학 교수
	경제·경영·회계 분야	관련학과 교수, 회계사, 관련분야 종사자
	기술 분야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시청자·소비자 분야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방통위 사무조직	담당 과장

다. 심사항목 및 배점

- 방송법에 규정된 심사기준에 근거하되, 심사사항의 취지 및 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사한 항목을 6개 심사사항(대분류)으로 통합

심사사항(대분류)	비 고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방송법 제17조제3항제1호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법 제10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17조제3항제3호·제4호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방송법 제10조제1항제2호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방송법 제10조제1항제4호·제5호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방송법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17조제3항제2호·제5호·제6호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방송법 제10조제1항제7호

- 심사항목별 총점은 1,000점 만점으로 하며, 세부 심사기준 및 평가 지침은 당해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심사사항(대분류)	지상파방송사업자				PP	
	TV	R	DMB	공동체R	총편	보도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400	400	400	-	400	400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250	250	200	350	210	260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계획의 적절성	150	150	120	200	190	160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100	100	180	350	100	80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100	100	100	100	100	100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방송평가는 종전 재허가·재승인에 반영된 방송평가 이후 평가자료 반영

\*\* 필요시 방송통신위원회가 당해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세부계획 의결 시 전체 배점의 10% 범위 내에서 정함

라. 재허가·재승인 여부 결정

- (총점)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재승인'을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재승인' 또는 '재허가·재승인 거부'를 의결
- (유효기간) 70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 사업자는 4년,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허가·재승인' 시 3년을 부여
- (이행점검주기) 70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 사업자는 1년, 650점 미만 사업자는 6개월로 설정
- \* 6개월 단위 이행점검이 성격상 불가능한 조건은 제외(예: 콘텐츠 투자)
- (조건부가)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추가제출 계획서 포함)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만 부가 가능하며,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추가제출 계획서 포함)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 외에 사업계획서에 없는 조건의 부가도 가능
  -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한 경우 재허가·재승인 사업계획서(추가제출 계획서 포함)에 없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다만, 중점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음
-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사항



## 마. 기타 주요 변경 사항

- 매체별 심사항목(중분류) 개선
  - △공익성 항목의 중복 해소 △프로그램 수급과 투자 항목 분리 △투자 항목 중복 해소 △경영 관련 심사 시 '경영전략' 심사 강화 △외주상생 관련 항목 명시 △지역방송 심사 시 '지역 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항목 신설 △종편PP 심사 시 '프로그램 균형 편성' 항목 신설
- 시청자 의견 수렴 관련, 홈페이지를 통한 설문을 실시하고 결과를 심사에 반영하는 등 방식을 다양화
  - ※ 방통위 홈페이지 설문을 유도하되, 기존 우편, Fax, E-mail 의견접수 방식도 배제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전체의 분량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300페이지 이내)하여, 사업계획서 작성의 완성도 및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
  - ※ 본문 300페이지 제한은 본사/중앙방송사에 한하며, 여러 지역방송국의 사업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경우, 1개 지역방송국 당 최대 50페이지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함

## 5. 정책적 활용 내용 및 기대효과

- 그동안 지적되었던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피드백 활용성 제고
- 문제점을 보완한 사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재허가·재승인 제도의 심사 효율성 제고
- 심사항목의 명확화를 통해 사업자 예측가능성 제고
- 사업계획서 분량 제한을 통해 심사 및 사업자의 행정낭비 감소



# SUMMARY

## 1. Title

A Study on improving system of licensing and approval for broadcasters

##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Research

The primary goal of this study is to draw up concrete measures to prepare for future audits by preparing improvement measures such as judging criteria and procedures that reflect the improvements that were made during the re-authorization·re-approval process.

## 3. Research Results

First of all, in order to rationalize the criteria for re-authorization·re-approval, we have differentiated(incentives / penalties) according to examination scores and expanded the conditional clause. Secondly, in order to rationalize the re-authorization·re-approval judging standards, we have proposed differentiated judging criteria for media, concrete criteria and segmentation of points for public accountability judging standard, and strengthening of the percentage of results compared to the plan. In addition, we proposed guideline for verifying contents Investment and guideline for reviewing program organization performance to rationalize re-authorization·re-approval condition checking standards. Finally, in order to rationalize re-authorization·re-approval procedures, we have improved the method of collecting opinions from viewers and drawn up a plan to

limit the amount of business plans.

#### **4. Policy Suggestions for Practical Use & Expect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improving the system related to re-authorization · re-approval and to establish the policy.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broadcasting sector system by complementing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system and preparing the criteria and procedures for fair and reasonable re-authorization · re-approval system.

#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Theoretical Discussion and Overseas Case

Chapter 3. Problems and Major Issues on System of Licensing and  
Approval

Chapter 4. Improvement of System and Plan of Licensing and  
Approval

Chapter 5. Conclusion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필요성) '15년 기본계획에 따라 '16년~'17년에 걸쳐 지상파방송 및 종편·보도 채널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문제점, 개선 필요성 등이 제기된 바 있음

문제점 또는 개선 필요성(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항목별 과락 기준 강화</li><li>○ 조건부 재허가와 조건이 부가된 재허가간 차별성 부재</li><li>○ 매체별, 소유 및 재무구조 별 차별화된 심사기준 마련</li><li>○ 방송의 공적 책임 관련 심사 강화</li><li>○ 외주 상생제도 강화</li><li>○ 방송평가 비중 축소 및 변별력 강화</li><li>○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폐쇄성 개선</li><li>○ 시청자 의견 수렴 절차 강화</li><li>○ 신청서 표준화, 작성지침의 사전고지</li></ul>

- (목적)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심사에 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도출

## 2. 기존 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1) 기존과제 현황

-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승인에 관한 기존 연구 중 방송위원회(2005)는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의 방송사업자 허가·재허가 제도를 소개하고 있으며, 당시 2004년 ITV 재허가 취소에 따른 후속조치 성격의 연구로, 해외 사례 중심의 연구라고 할 수 있음
- 박성철 등(2009)의 연구 역시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과 국내의 허가 및 검사 제도를 다루고 있음.
  - 세부적으로 허가구조체계, 관할 기관, 절차, 재허가 및 정기검사를 중심으로 국가별 특징을 정리하였고, 이를 통해 방송사업 허가와 방송국 허가의 구분, 정기검사 제도의 개선, 재허가 기간 연장, 허가 과정에서의 시청자 의견 제시 방식, 재허가 제도의 유연화 등에 관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성욱제 등(2011)의 연구는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허가·재허가규제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데,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의 해외사례를 정리하고 법적 체계(허가의 성격, 절차, 사업권역 등), 심사기준, 취소 이후의 절차, 유효기간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지상파 방송사업의 재허가에 한정해서 연구를 진행했음
- 송종현 등(2012)의 연구는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재허가 정책의 시기적 특성과 함께 심사기준과 심사절차의 변화 과정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음.
  - 구체적으로 재허가 심사기준 개선방안으로는 추상성 높은 심사항목을 세분화하고, 매체별·채널별 심사기준 차별화, 방송평가와의 중복 최소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 심사절차 개선방안으로는 신청서 작성방식의 개선방향과 방송국 단위로의 재허가 심사대상 변경, 재허가 심사의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을 담고 있음
- 특히 이 연구는 지상파방송에 대한 재허가 추천 거부가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점으로 인해 기준에 미달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방송사업자에 대해 다양한 조건과 권고사항이 부과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 등 부관사항의 특징을 시기별로 구별해 분석한 바 있음
- 이종원 등(2014)의 연구는 지난 10여 년 동안의 재허가·재승인 제도의 성과를 인정하면서 2013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와 2014년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을 거치면서 제기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다루고 있는데,
  - 개선방안으로는 방송사업자의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예측가능성 높은 방안 제시
  - 심사기준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심사항목을 체계화하고, 매체별 심사배점을 차별화
  -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가칭 임시허가 및 승인제도의 도입 등을 제안하고, 재허가 및 재승인 거부시 후속 절차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바 있음
- 송종현 등(2015)의 연구는 다른 (재)허가관련 연구와는 달리 허가나 재허가 심사에서 부여되는 부관사항의 법률적 성격과 특징을 분석하고 있음
  - 지난 2008년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실시된 (재)허가·승인 심사에서 부여된 조건과 권고사항을 전수 조사하여 내용분석을 통해 정량분석과 정성분석을 실시한 바 있음
  - 부관사항으로서의 조건은 그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처분과 재허가 취소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적이행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성될 필요가 있다는 점 등과 같은 부관사항 작성을 위한 기본 방향 제시

- 송중현, 윤성욱(2016)의 연구는 재허가·재승인 절차 및 심사기준 과거 사례 분석을 통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매체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심사기준 및 절차 적용 사항, 재허가·재승인 심사기준 관련하여 고시 결정사항과 심사위원회 재량 결정사항 분류 기준, 재허가·재승인 심사기준 고시(안) 마련 등을 연구한 바 있음
- 송중현 등(2017)의 연구는 방송사업자(UHD, FM라디오 허가 심사기준, 허가·승인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고시(안), 허가·승인 부관사항 작성 가이드라인(안) 마련 등을 기술하고 있음

## 2) 차별성(독창성)

- 본 연구는 '15년 마련된 재허가·재승인 사전기본계획에 따라 '16년~'17년에 걸쳐 지상파방송 및 종편·보도채널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심사 대비
  - 기존 연구에서는 특정 방송매체(UHD방송사업자, 라디오방송사업자)의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나 '고시 결정사항과 심사위원회 재량사항 분류 기준' 등 심사과정의 특정 부분을 위한 연구였음에 반해, 이번 '재허가·재승인 심사기준 및 제도개선 방안마련' 연구는 모든 방송매체와 재허가·재승인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포괄적 연구임
  - 또한 기존 연구는 향후 심사를 위한 기준 등을 제시하는 연구이었으나, 이번 연구는 14년부터 17년까지 모든 방송매체의 재승인·재허가 심사를 실제 실시한 후 심사과정에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 사업계획서 작성 기준, 심사위원회 구성, 방향, 재무안정성 평가 지표, 과락항목 운영, 방송평가 비중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라는 점에서 기존 연구보다 실제 업무 활용도에 있어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제 2 절 연구의 구성 및 방법

### 1. 연구의 구성

- 위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크게 다섯 개의 부분으로 나뉘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됨
  - 제1장은 서론으로 본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전체 보고서의 구성 및 내용, 그리고 연구방법을 기술함
  - 제2장은 재허가/재승인 제도의 법적 개념과 해외 사례를 다룸
  - 제3장은 현행 재허가/재승인 심사제도의 현황, 문제점, 이에 따른 주요 이슈를 다룸
  - 제4장은 연구결과에 해당하며, 재허가/재승인 심사제도의 주요이슈에 대한 논의점과 이를 통한 개선방향, 그리고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안)을 제시함
  - 제5장은 결론으로, 정책적 제안, 기대 효과 및 한계를 기술하고 있음

### 2. 연구의 방법

- 재허가/재승인 심사제도의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고, 재허가/재승인 제도의 직접적인 대상자인 사업자들의 의견수렴 실시
- 자문단은 재허가/재승인 심사 경험이 많아,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

\* 송중현(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노진백(삼일회계법인), 김태오(창원대 법학과 교수), 박주연(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성욱제(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해외 사례

### 제1절 (재)허가/승인의 법적 성격

#### 1. 논의의 범위

- 방송법에는 방송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진입규제가 존재하며, 방송 사업을 하려면 허가·승인·등록 등을 받아야 방송 사업이 가능함
  - 이와 같은 다양한 진입규제의 유형을 구분하는 실익은 각 유형마다의 규제강도가 다르기 때문
- 한편, 법률에서 허가·승인·등록이라는 진입규제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지만, 학문상의 개념과 일치하지는 않음
  - 학문적으로는(강학상) 특허·허가·신고 등의 유형이 존재. 방송법상의 진입규제를 이러한 학문적인 진입규제 유형에 대응시킴으로써 방송법상 진입규제의 법적 성질과 본질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음
  - 이하의 논의는 특히 방송통신위원회가 소관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와 종합편성채널의 승인으로 논의의 범위를 좁혀 법적 성격 분석이라고 할 수 있음

## 2. 지상파방송사업의 허가

### 가. 지상파방송사업 허가의 체계

- 지상파방송사업을 하려면 방송사업 그 자체에 대한 허가(business license)와 지상파방송을 위한 기술적 차원에서의 설비, 설비 운용종사자, 이에 필요한 주파수 이용권리 등에 대한 허가가 필요
  -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방송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방송법 제9조제1항은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 개설과 관련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송부 받은 심사 결과를 허가에 반영하여야 한다.”<sup>1)</sup>
  -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필요. 지상파방송을 위해 분배된 방송용 주파수 대역을 이용해야하기 때문. 이러한 방송용 주파수는 ‘주파수지정’을 통해 그 이용의 권리 취득 가능.<sup>2)</sup>
  - 특히 주파수지정은 “허가나 신고로 개설하는 무선국에서 이용할 특정한 주파수를 지정하는 것”(전파법 제2조제1항제3호). 이러한 정의 규정에 따를 때, 주파수지정을 받으려면 무선국의 허가 또는 신고가 전제되어야 함
  - 또한, 전파법 제21조제2항은 무선국 허가의 심사요건으로 “주파수지정이 가능

---

1)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 시절에는 “지상파방송사업 또는 위성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방송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었고, 방송통신위원회로 일원화될 당시에는 “지상파방송사업 또는 위성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었다. 각 소관에 따른 변천을 겪었지만, 방송법상 business적 관점과 전파법상 기술적 관점을 분리했던 점에는 큰 변화가 없다.

2) 주파수지정을 통한 주파수 이용의 권리 부여에 대해서는 이희정(2011), “주파수이용권의 법적 성질에 대한 이론적 고찰(1) - 규제·기대·권리 그리고 재산권”, 『행정법연구』 제 30호, pp.330. 물론, 주파수지정 이전에 주파수분배표에서 방송용 주파수로 용도가 먼저 정해져야 한다.

한지의 여부”를 규정. 무선국 허가과 주파수지정은 절차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 지상파방송을 위한 무선국을 전파법은 특히 방송국<sup>3)</sup>이라고 하고, 방송용 주파수의 이용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주파수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방송국 개설허가 취득(전파법 제34조제1항) 필요

- 지상파 방송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business license 개념인 방송법에 따른 허가과, 방송용 주파수를 이용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기술적 차원의 전파법에 따른 방송국 허가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실무적으로는 별개의 허가가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방송국 허가증으로 방송법에 따른 허가과 전파법에 따른 허가가 통합되어 발급

#### 나. 지상파방송사업 허가의 기준

- 방송법 제10조는 방송사업 허가의 심사기준을 정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 계획의 적절성,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절성,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전파법에 따른 기준은 방송용으로 분배된 주파수의 범위에서 주파수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설치하거나 운용할 무선설비가 전파법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무선종사자의 배치계획이 전파법 제71조에 따른 자격·정원 배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전파법 제35조에 따른 방송국의 개설조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 그 밖에 방송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연주소 보유여부, 방송국 시설설치계획의 적절성, 기술적능력 보유 여부 등; 전파법 시행령 제55조) 등 기술적 사항에 대한 심사의뢰를 미래부장관에 대해 받드시 하여 그 결과를 최종 허가에 반영토록 하고 있음(전파법 제34조 제2항).

---

3) 방송국이란 공중(公衆)이 방송신호를 직접 수신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개설한 무선국을 말한다(전파법 제2조제1항제9호).

다.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따른 방송사업 허가의 헌법적 근거

- 헌법재판소가 지상파방송사업 허가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단한 바는 없지만, 다음의 종합유선방송사업·중계유선방송사업에 대한 결정례<sup>4)</sup>를 통해 방송사업 허가의 헌법적 근거, 지상파방송사업에 대한 진입규제의 강도와 정당성에 대한 논리를 엿볼 수 있음
- 헌법재판소는 “구조적 규제의 일종인 진입규제로서의 이 허가제는 방송의 기술적·사회적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서 정보와 견해의 다양성과 공정성을 유지한다는 방송의 공적 기능을 보장하는 것을 주된 입법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표현내용에 대한 가치판단에 입각한 사전봉쇄를 위한 것이거나 그와 같은 실질을 가진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의 금지된 ‘허가’<sup>5)</sup>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다만, 허가의 요건이나 허가제 운영내용이 기본권제한의 일반적 한계를 지키지 않았는지 또는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이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므로 다루지 않는다). 종합유선방송은 종래의 주류적 방송인 지상파방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정보유통 통로의 유한성이라는 특성이 약하고 방송매체에 대한 또 다른 규제근거로 논의되는 ‘사회적 영향력’도 종합유선방송이 유료가입신청제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할 수 없지만, 적어도 현재로서는 이러한 방송매체로서의 특징들을 무시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며, 한편 방송시설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제21조 제3항이 규정하는 바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에 대한 진입규제로서의 사업허가제를 두는 것 자체는 허용된다고 본다.”
- 헌법재판소는 방송허가제에 방송의 공적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음. 지상파방송과 종합유선방송을 비교하면서, 지상파방송에 대한 규제의 정당성을 정보유통 통로의 유한성으로 언급하고 있음

---

4) 헌법재판소 2001. 5. 31. 선고 2000헌바43,52(병합) 전원재판부.

5) 헌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서의 ‘허가’이다. 이 조항은 사전검열, 사전내용규제를 의미하는 허가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 사회적 영향력도 허가의 정당성 논거로 제시. 궁극적인 헌법상 방송허가제의 법적 근거로 헌법재판소는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는 헌법 제21조제3항 언급. 즉, 일정한 방송시설기준을 구비한 자에 대해서만 방송 사업 허가 부여.

라. 지상파방송사업 허가의 법적 성질

- 방송법에서는 지상파방송의 허가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러한 허가가 학문적으로 허가에 해당하는지 특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규명할 필요가 있음
  - 학문적으로 허가라는 진입규제 수단은 원칙적으로 기본권에 속하는 자유의 영역이지만, 이러한 기본권 행사(예컨대, 건축행위라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나 재산권의 이용으로서의 재산권 행사)에 잠재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위험(예컨대, 부실공사로 인한 건축물붕괴, 비상탈출구를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화재시 인명사고 발생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한 법률상 요건(건축법상 허가요건) 아래 그 기본권 행사를 잠정적으로 금지하였다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회복시켜주는 것<sup>6)</sup>. 요건이 충족되면 허가가 발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기속행위’의 성질도 갖고 있음
  - 이에 반해, 학문적 의미에서의 특허는 원칙적으로 권리, 능력 혹은 포괄적 법적 지위를 설정하는 행정행위로서 설권행위를 의미.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어떠한 행위나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처음부터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당연히 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
  - 국가가 특허를 발급하여야 비로소 그 ‘권리’가 생기는 것으로, ‘자연적 자유의 회복’을 의미하는 허가와의 근본적으로 다름.
  - 특히 특허가 요청되는 영역은 ‘최소성’이 있는 분야로, 자연자원의 개발과 사용에 관한 사업,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산업분야로서 공공재 또는 유익재를 생산하는 산업이나 자연독점적 산업, 당해 활동 그 자체가 해악성을 가지는 카지노 사업 등

6) 이원우(2010), 『경제규제와 법』, 448면.



사해행위에 관련된 사업이 여기에 해당됨.<sup>7)</sup> 허가와는 달리 특허는 '재량행위'에 더 친하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기준에 비춰볼 때, 지상파 방송 사업은 전파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방송용 뿐만 아니라, 통신용, 그 밖의 다양한 용도로 전파자원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러한 수요에 전파자원의 공급이 원활치 못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함
- 전파자원의 특성상 효율성이 높은 대역은 누구나 활용하고자 할 유인이 있으며, 지상파방송은 사회적 영향력이 높음
- = 물론 다양한 경쟁매체의 등장으로 지상파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고하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영향력에 비례하여 공적인 책임과 그 자격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누구나'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함. 헌법재판소도 지상파방송사업은 전파자원을 사용하므로 희소성이 있고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며, 용이한 접근성으로 인한 사회문화적 영향력이 크다고 판단한 바 있음<sup>8)</sup>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학문적으로는 지상파방송사업 허가는 '특허'라고 할 수 있음<sup>9)</sup>
- 다만, 오늘날 허가와 특허의 구별이 상대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정적으로 허가나 특허 중 어느 하나로의 결론이 중요하기 보다는 그 속성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지상파방송사업의 허가는 수익적 행정행위임. 심사기준이 대부분 추상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폭넓은 재량이<sup>10)</sup> 부여되어 있음

---

7) 이원우(2010), 앞의 책, 453면 이하.

8) 헌법재판소 2015.04.30. 선고 2012헌바358 전원재판부.

9) 김민호(2013), "방송법 제9조에서 허가·승인·등록의 법적 의의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제25권 제3호, 113면; 양승동(2006), "방송사업허가제의 정당성과 공영방송에 대한 재허가의 문제점", 『언론과 법』 제5권 제2호, 205면.

10) 서울고등법원, 2007. 7. 26, 2006누23595 판결.

- 허가의 구체적인 기준은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에 마련되어 있음. 이를 근거로, 심사사항별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설치되며, 통상(재)허가 여부는 심사위원회가 정량적으로 평가한 평가결과(예컨대,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에 기속됨
- 허가의 법적 성질이 강학상 특허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러한 정량화된 심사결과에 처분청이 반드시 기속되지는 않음
- 처분청의 추가적인 재량적 판단결과에 따라 정량화된 심사결과가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음. 예컨대, 정량화된 심사결과(재)허가 기준 점수를 상회했다라도, 일부 사항에 대한 당해 사업자의 흠결이 공익적 관점에서 심히 중대하다는 재량적 판단에 따라(재)허가 거부가 결정될 수 있는 것. 다만, 허가 여부는 재량이지만 재량권을 일탈·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명확함

### 3. 종합편성채널의 승인

- ‘승인’이라는 행정행위 유형의 법적 성질도 지상파방송사업 허가 와 같이 ‘특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sup>11)</sup>
  - 일정 자격이나 조건을 충족하는 ‘누구나’ 종편 PP, 보도 PP, 홈쇼핑 PP 승인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5억 원 이상일 것, 주조정실, 부조정실, 종합편집실 및 송출시설을 갖출 것, 해당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무실을 보유할 것, 방송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다른 채널명과 동일한 채널명 또는 시청자가 동일한 채널로 오인할 수 있는 채널명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등과 같은 요건만 갖추면 진입이 허용되는 PP 등록제(방송법 제9조의2)와 법적 성격이 다른 것이라고 봐야 함
  - 종합편성채널은 지상파방송과 유사할 정도의 공적 책임과 사회적 영향력이 있다는 점, 종합편성채널의 승인 수를 인위적으로 제한하여 승인권이 ‘희소’하다는 점, 승인의 요건에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어 있어 승인 여부에 대해 재량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허로 분류하기에 충분함
  - 방송법 제9조제3항에서 규율하고 있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전환 승인의 법적 성격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판례<sup>12)</sup>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게 종합유선방송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부여하는 설권적 행정행위로서 그러한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승인하는 방법과 절차를 택함에 있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폭넓은 재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음

---

11) 종편 PP, 보도 PP, 홈쇼핑 PP 승인의 법적 성질이 강화상 특허에 해당된다는 견해의 소개는 박종수(2011), “방송채널사용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현행 방송법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규제제도의 개선방안”, 『공법연구』 제40집 제2권, pp.427. 다만 박종수 교수는 입법연혁적 측면에서 PP가 허가제였다가 등록제로 완화된 반면, 보도 PP의 경우 등록제보다는 강화된 승인제를 통해 진입이 허용되었으므로, 승인제는 ‘완화된 허가’로서의 성질이 있다고 본다.

12) 서울행정법원 2003. 7. 15. 선고, 2001구22464판결.

-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방송위원회로부터 승인장을 교부받을 때 비로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의 확정적인 지위를 취득하게 되므로,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승인장 교부처분은 종합유선방송사업승인의 성질을 갖는 설권적 행정처분”이라고 판시한 바 있음. 이러한 법리는 종합편성채널의 승인에도 그대로 적용 가능

## 제 2 절 해외 사례

### 1. EU<sup>13)</sup>

- 관련 회원국에 따라 AVMS사업자가 시장 접근권을 허가받는 방식이 매우 다양함
  - “라이선스 제도(Licensing)”는 관할기관(정부, 규제당국-이하 RA- 등)이 라이선스를 신청한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승인 또는 거부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제도로 간주
  - 보통 콘텐츠 기준(예: 프로그램 편성 또는 투자에 관한 약속, 경매에 제안된 금액 등)을 기반으로 결정되며, 예를 들어 보통 입찰, 비교심사, 경매, 면허, 개별 승인 등으로 설명되는 상황을 포함
- “라이선스” 제도는 다음 4개의 카테고리로 개선되어 분류
  - 비교심사(beauty contest): 공개 입찰의 틀 안에서 다른 지원자들과의 경쟁 후 한 지원자에게 부여되며, 선정은 공개 입찰에 대한 답변서에 포함된 지원자들의(보통 프로그램 편성, 다원성에 대한 기여 및 제안의 다양성 측면에서의) 약속을 기반으로 이루어짐. 대개 DTT주파수와 같은 부족한 자원을 사용하는 특권 내포
  - 경매(auction): 공개 입찰의 틀 안에서 다른 지원자들과의 경쟁 후 한 지원자에게 부여되며, 선정은 면허 취득을 위해 지불을 약속한 금액을 기반으로 이루어짐. 이 면허부여 방식도 또한 일반적으로 주파수와 같은 부족한 자원을 사용하는 특권 내포
  - 개별 면허(individual licence): 지원자는 다른 지원자들과의 경쟁이 아니라 자신의 신청서에 나타난 장점(보통 프로그램 편성, 다원성에 대한 기여 및 제안의 다양성 측면)을 근거로 판단. 최소한 자원을 사용하는 특권의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잠재적인 지원자들과의 비교과정 없음

---

13) European Audiovisual Observatory(2018), Mapping of licensing systems for audiovisual media services in EU-28

- 형식 면허(formal licence): 지원자가 기본적인 형식 조건을 충족하면(예: 지원자에 대해 요구된 법적 정보 제공, 해당 국가에서 설립됨, 적절한 법적 지위를 갖추 등) 자동으로 면허 부여. 면허 부여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고(이론적인 경우라 할지라도), 면허가 제한된 기간 동안 유효하다는 점(기간 제한이 없는 신고의 경우와는 반대)을 제외하면 거의 신고 제도와 동일
- 네 가지 다양한 형태의 라이선스 제도는 회원국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제도로 헝가리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29개 중 28개)에서 시행하고 있음
  - 회원국에서의 면허제 카테고리별 사용 분류는 다음과 같음
    - 비교심사: 28개 중 18개 사례
    - 경매: 28개 중 2개 사례
    - 개별 면허: 28개 중 14개 사례
    - 형식 면서: 28개 중 10개 사례
- 비교심사 제도는 DTT를 통해 유통되는 AVMS에 대해 거의 독점적으로 사용
  - 예외적으로 키프로스는 모든 AVMS에 대해 비교심사제 적용
- 경매 제도는 매우 드물게 적용. 그리스에서만, 그리고 폴란드에서는 부분적으로 (비교심사제와 결합되어 면허부여 절차의 잠재적인 두 번째 단계에서만) 시행
- 개별 면허 및 형식 면허 제도는 상당히 자주 사용되는데, 보통 DTT이외의 수단 (케이블, IPTV, 위성, OTT)을 통해 유통되는 AVMS에 적용되며, 이외에도 DTT 플랫폼에 대한 접근이 국가가 아닌 네트워크 사업자에 의해 부여된 경우 DTT를 통해 유통되는 AVMS에 대해서도 사용

〈표 2-1〉 회원국에서 적용되는 면허제도 카테고리

	Beauty contest	Auction	Individual licence	Formal licence
AT				0
BE FR				0
BE NL				0
BG	0		0	
CY	0			
CZ				0
DE			0	
DK	0			
EE	0		0	
ES	0			
FI	0			0
FR	0		0	
GB	0		0	
GR		0	0	
HR	0			0
HU				
IE	0		0	
IT				0
LT	0		0	
LU	0			
LV	0		0	
MT			0	
NL				0
PL	0		0	
PT	0		0	
RO	0		0	
SE	0			
SI	0			0
SK			0	0

Source: Analysis of the responses to European Audiovisual Observatory standardised questionnaire

## 2. 일본<sup>14)</sup>

- 2011년 6월 시행된 개정 방송법으로 크게 바뀜
- 개정 방송법에서는 무선과 유선을 전기통신으로 통합한 뒤, '기간방송'(基幹放送: Basic Broadcasting)과 '일반방송'(一般放送: General Broadcasting)으로 양분
- 기간방송은 "우선적으로 방송용 무선국으로 할당된 주파수를 이용한 방송"(제2조 제2호)을 말하며, 지상파기간방송(중파, FM, 단파, TV), 이동수신용 지상파기간방송, 위성기간방송 등이 있음. 현행 지상파방송은 특정지상파기간방송에 해당하며, 면허 대상
- 방송설비와 편집을 분리한 제도를 통해 신규로 참여한 사업자는 지상파기간방송으로 분류되며, 이들 사업자는 인정대상<sup>15)</sup>
- 11년 방송법개정을 통해 지상파방송에도 방송설비와 편집이 분리된 새로운 형태의 방송 사업이 도입

### 1) 지상파방송국의 면허 및 재면허 심사기준

- 방송면허는 전파법과 방송법의 적용을 받음. 전파법에서는 무선국 면허를 규정하고 있으며, 방송법에서는 방송의 보급, 방송프로그램, 방송국 운영 등을 규제
- 심사기준은 전파법과 방송법 이외에 시행규칙, 행정명령(기준, 성령), 훈령, 고시 등에서 심사기준과 제출서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이외에 총무성에서는 면허와 재면허 신청시에 방침을 발표하며, 신청매뉴얼, 신청절차 등 제공

---

14) 송종현·윤성욱(2017), 방송사업 재허가·재승인 심사 기준 고시화 및 계량화 방안에 관한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제2장 제2절 일본 중 발췌, 요약

15) 인정(approval)이란 총무대신이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업자를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규제수준으로 보면, 면허보다는 가볍지만 등록이나 신고보다는 상대적으로 무거운 규제를 받는다. 현행 방송제도에서는 방송설비(하드웨어)와 편집(소프트웨어) 분리형 지상파방송과 잔여주파수를 이용한 이동수신방송, BS(Broadcasting Satellite)방송, 110도 CS(Communication Satellite)방송이 해당한다.



〈표 2-2〉 지상파방송 면허 및 재면허 관계 법령

법률	전파법	방송법
행정명령	전파법시행규칙 무선국 면허절차규칙 기간방송국 개설의 근본적 기준	방송법시행규칙 기간방송의 업무 관련 표현의 자유 향유기준에 관한 성령
훈령	전파법관계심사기준	방송법관계심사기준
고시		기간방송보급계획
기타		지상파기간방송국 면허 및 재면허 방침 지상파기간방송국 재면허 신청 매뉴얼 기간방송 기술기준 관련 신청절차

## 2) 적합성 심사

- 심사기준은 ① 공사설계의 기술기준 적합성, ② 방송용 주파수 할당가능성, ③ 업무유지에 충분한 경리적 기초 및 기술적 능력 등. 이외에 지상파방송은 추가적으로 ④ 기간방송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성(방송법 제111조 제1항), ⑤ 표현의 자유 향유 기준 적합성(방송법 제93조 제1항제4호), ⑥ 기간방송보급계획 적합성(방송법 제91조 제1항) 등
- ②의 경우, 지상파방송은 '주파수할당계획'적용 대상. 이는 전파법(제26조제1항)에 의거해 총무대신이 작성한 할당가능 주파수 대역표라고 할 수 있음. '기간방송보급계획'의 적용 대상. 이는 방송법(제91조)에 의거한 총무성 고시로 방송보급을 위한 기본사항, 방송대상지역, 방송국의 수 등을 규정
- ③은 방송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를 요구하는 기준으로, 면허 신청시에 무선설비 공사비, 사업계획 및 사업수지 견적서, 방송사항, 방송구역 등 제출
- ⑤는 '방송국 개설의 근본적 기준'으로 불리며, 특히 대표적인 소유규제인 '매스 미디어집중 배제원칙' 적용

3) 심사항목

- 지상파방송의 무선국면허 심사항목은 일반사항과 추가사항으로 구성
- (일반사항) ① 목적, ② 개설이유, ③ 통신대상 및 통신사항, ④ 무선설비 설치 장소, ⑤ 전파형식 및 희망 주파수 범위, 안테나 출력, ⑥ 희망 운용허용시간, ⑦ 무선설비의 공사설계 및 공사준공 예정기일, ⑧ 운용개시 예정기일, ⑨ 혼신 방지조치 등
- (추가사항) ① 무선설비 공사비 및 무선국 운영비 지불방법, ② 사업계획 및 사업 수지전적 ③ 방송구역, ④ 기간방송업무에 사용되는 전기통신설비의 개요 등

〈표 2-3〉 지상파방송의 사업계획서 기재사항

별지 번호	기재사항	면허	재면허	
1	경영형태 및 자본 또는 출자액	○	○	
2	사업시작까지 필요한 용도별 자금 및 조달방법	○	—	
3	주요 출자자 및 의결권의 수	○	○	
	외국인 등이 차지하는 의결권의 수	○	○	
4	10% 초과 의결권 보유자에 관한 사항	●	●	
5	10% 초과 의결권 보유 지상파방송사업자, 33.3% 초과 의결권 보유 위성기간방송사업자, 이동수신용 기간방송사업자 관련 사항	●	●	
6	임원에 관한 사항	○	○	
7	방송프로그램편집에 관한 기준	●	●	
8	방송프로그램편집에 관한 기본계획	●	●	
9	주간 방송프로그램 편집에 관한 사항	방송프로그램 편성표	●	●
		방송의 목적별 종류에 의거한 방송시간	●	●
		지역프로그램	●	●
		자체 제작하는 프로그램, 제작체제	●	●
		외부로부터 공급받는 프로그램의 시간대	●	●
	외국어방송의 방송시간	●	●	
10	방송프로그램 심의기관에 관한 사항	●	●	
11	방송프로그램 편집기구 및조사(考査)에 관한 사항	●	●	
12	재해방송에 관한 사항	●	●	

별지 번호	기재사항		면허	재면허	
15	방송사업 이외사업, 업무개요	경영하는 사업	○	○	
		다른 사업에 출자	○	○	
16	장래 사업예정	중계국 정비계획	○	○	
		새로운 난시청 대책 관련 계획	—	○	
		장애인방송 실시계획(자막, 해설방송)	●	●	
		장애인방송 실시계획(광고자막, 재해자막, 수화방송)	●	●	
17	사업수지 견적	견적표	○	○	
		견적의 근거 수익	●	▲	
		견적의 근거 비용		○	
18	방송프로그램 주요 예상 이용자		●	—	
19	면허기간 사업실적	사업수행 개요	—	▲	
		주당 방송실시상황(외부 공급 프로그램 시간대)	—	▲	
		방송 프로 그램 관련 참고 사항	공안 및 미풍양속을 해치지 말 것	—	●
			정치적으로 공평할 것	—	●
			보도는 사실을 왜곡하지 않지 말 것	—	●
			다각적으로 논점 분명히 할 것	—	●
			프로그램조화 확보	—	▲
			교육프로그램 10%, 교양 20% 확보	—	▲
			장애인방송 실시	—	▲
			프로그램기준 제정 및 준수	—	●
			프로그램심의기관 설치	—	▲
			재해방송 실시	—	●
			외국어방송 방송시간	—	▲
			동일지역 타사와 중복편성(1/3 이상)금지	—	▲
			매일 방송 실시	—	▲
			방송프로그램 공급협정	—	●
			방송프로그램 주요 이용자	—	●
			면허기간 자산, 부채, 수지 실적		—

- (비교심사) 면허신청자가 다수이고, 심사기준을 통과한 신청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기간방송국 개설의 근본적 기준(제10조)과 전파법관계심사기준(제3조의14)에 의거해 비교심사 추진
- 평가항목은 ① 사업계획 실시 확실성, ② 방송대상지역 내의 가구점유율, ③ 장애인방송 실시, ④ 방송의 공정하고 능률적인 보급 등이며, 평가점 합산

〈표 2-4〉 비교심사 평가항목 및 평가점

비교심사기준		평가기준	평가점
사업계획 실시 확실성 (18점)	사업계획에 기재된 계획을 확실하게 실시하기 위한 자금계획 등 경리기초가 확실할 것(10점)	현재 보유 자본 또는 사업전체의 수지로 대응한다	10
		확실한 증거를 통해 대응한다	8
		확실한 차입금으로 대응한다	6
		대략 확실한 증거나 차입금으로 대응한다	4
		불확실한 요소의 다른 수단(시청자가 방송사업과는 달리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수입 등)으로 대응한다	2
	사업계획에 기재된 계획을 확실히 실시하기 위한 방송국(演奏所) 설비, 송신소 설비, 중계국송신소 설비 등 송출설비, 방송프로그램 제작설비, 사업계획 수행상 필요한 설비 정비계획이 확실할 것(4점)	정비계획이 확실하다	4
		정비계획에 불확실한 요소가 있다	1
	사업계획에 기재된 계획을 확실히 실시하기 위한 방송프로그램 제작체제, 조달체제가 확실할 것(4점)	방송프로그램 제작체제, 조달체제가 확실하다	4
		방송프로그램 제작체제, 조달체제에 불확실한 요소가 있다	1
	방송대상지역 내의 가구 커버율 방송대상지역 내의 가능한 많은 가구에서 방송전파의 직접수신이 가능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10점)	방송대상지역 내의 가구 커버율 99% 이상	10
방송대상지역 내의 가구 커버율 97% 이상 99% 미만		8	

비교심사기준		평가기준	평가점
방송대상지역 내의 가구 커버율 방송대상지역 내의 가능한 많은 가구에서 방송전파의 직접수신이 가능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10점)		방송대상지역 내의 가구 커버율 94% 이상 97% 미만	6
		방송대상지역 내의 가구 커버율 91% 이상 94% 미만	4
		방송대상지역 내의 가구 커버율 91% 미만	2
장애인 방송 실시 (2점)	자막을 부여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가능한 많이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1점)	2017년도까지 자막 부여 가능한 모든 프로그램(7시부터 24시까지, 해설방송도 동일)에 자막을 부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1
	해설을 부여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가능한 많이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1점)	2017년까지 권리처리 상의 이유로 해설을 부여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의 10%에 해설을 부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1
방송의 공정하고 능률적인 보급 (6점)	지역사회의 요망을 충족할 방송을 보다 많이 마련할 것	로컬프로그램 비율이 주당 방송시간의 25% 이상	3
		로컬프로그램 비율이 주당 방송시간의 10% 이상 25% 미만	2
		로컬프로그램 비율이 주당 방송시간의 10% 미만	1
	예비면허 이후 가능한 조기에 방송시작이 예정된 계획일 것(3점)	예비면허 이후 6개월 이내에 방송시작	3
		예비면허 이후 9개월 이내에 방송시작	2
	예비면허 이후 1년 이내에 방송시작	1	

# 제3장 재허가/재승인 심사제도의 문제점 및 주요 이슈

## 제1절 현황

- 재허가·재승인 심사는 기본계획 수립→신청서 접수→시청자 의견청취→심사위원회 심사평가를 거쳐 재허가·재승인 여부 의결
  - 심사기준은 방송법 제10조제1항, 제17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사사항을 기본으로 정책목표 및 매체 특성에 따라 구성하되, 심사항목은 방통위에서 의결하고 세부 심사항목은 심사위원회에 위임
- 현재 국내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제도는 방송법 제9조와 제17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관련 법률에 의거해 방송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TV/R/DMB)과 보도전문 및 종합편성채널사업,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에 대한(재)허가·승인을, 미래창조과학부는 유료방송사업(SO, 중계유선, 위성)과 홈쇼핑채널에 대한(재)허가·승인을 담당하고 있음
- 방송법 제9조 제12항은 방송사업의 허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방송법 시행령 제5조는 허가신청서에 포함되는 서류(제1항), 허가신청기준(제2항), 허가절차(제3항)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있음
  - 동조 제4항에서는 허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을 미래창조과학부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이에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의 제3조는 지상파방송사업과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적시하고 있음<sup>16)</sup>

---

16)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의 목적 및 신청인에 관한 사항 ② 방송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채널운용계획을 포함한다) ③ 방송프로그램 편성·

- 재허가의 경우, 방송법 제17조 제1항에서 재허가는 동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11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허가절차와 유사하게 진행하고 있음
- 방송사업의 허가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방송법 제10조 제1항에 언급되어 있는데, 총 7개 항목에 대해 심사하도록 되어 있음.
  - 첫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둘째,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셋째,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넷째,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다섯째,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여섯째, 방송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일곱째,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 재허가의 경우, 방송법 제17조 제3항에서, 허가심사기준과 더불어 7가지 항목을 추가해 심사하도록 하고 있음
  - 첫째, 방송평가 둘째, 방송법에 의거한 시정명령 횟수와 불이행 사례 셋째, 시청자 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 넷째,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다섯째, 방송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여부 여섯째,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광고 판매 지원 이행 정도 일곱째, 기타 허가 또는 승인 당시의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

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④ 조직 및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⑤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⑥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이다. 아울러 허가신청서 양식은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서식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표 3-1〉 재허가/재승인 심사 기준 현황

구분	근거	공동 현황	차별적 현황	비고	
① 지상파 방송 (TV·R) (허가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 (15년 9월, '16. 1~'18. 12 적용)</li> <li>• 기본계획에 의거 심사 전년도에 매 체별로 1년 단위로 세부계획 수립 → 매 심사시 세부심사기준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허가·재승인 대상사업자 및 심사 시기</li> <li>• 심사위원회 구성 방안 및 결격사유</li> <li>• 심사위원회 운영(임무, 의견 청취 방식, 계량평가 및 비계량 평가 등 평가방식)</li> <li>• 심사기준 및 배점(심사사항, 심사항목, 세부 심사항목 및 평가요소 등 규정)</li> <li>• 재허가·재승인 기준 점수 및 과락 규정</li> <li>• 재허가·재승인 세부추진 일정</li> </ul>		법령에 고시 제정근거가 없어 기본계획 형태로 재허가·재승인 심사기준을 규정	
② 종편PP (승인제)					'공적책임 실현가능성'과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적절성' 2개 항목에서 점수가 50% 미만일 경우 재승인 거부 가능
③ 보도PP (승인제)					
④ 지상파 DMB (허가제)					
⑤ 공동체 라디오 (허가제)					'방송평가' 배점 없음
⑥ SO, 위성방송 (허가제, 사전 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O 등 재허가 사전동의 기본 계획('15. 3월 제정, '18. 5월~시효없음)</li> <li>• 필요 시 기본 계획 변경(과기정통부는 2년 단위로 심사 기본 계획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허가 세부추진 일정(과기부 소관)을 제외하고는 기타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심사 기준과 유사한 항목들로 구성</li> </ul>	재허가 세부 추진 일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과기부 기본계획에 세부 추진일정 포함)	- 법령에 고시 제정 근거가 없어 기본계획 형태로 재허가 사전동의 심사기준 규정 - 사전동의 내용은 과기정통부에 구속력을 지님	
⑦ 공익·장애인 채널 (선정·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시 제정 추진 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심사기준과 유사하나 보다 간략히 구성되어 있음</li> </ul>	공익·장애인 채널의 신규 선정 및 인정 행위	'18. 2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시 근거 신설	

출처: 방통위 내부자료



## 제 2 절 문제점 및 주요 논의사항

### 1.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지적된 문제점

가. 지상파방송 재허가 심사(매체 공통 포함)

○ (매체별, 소유 및 재무구조 별 차별화된 심사기준 마련)

－ 매체별 심사목적에 맞는 심사 및 배점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

(4기 정책과제 관련 시민단체 의견)

－ 현행처럼 소유·재무구조 등에 따른 차별화 없이 동일 항목과 배점으로 심사를 할 경우, 실효성 있는 공익성 제고 방안 마련이 어려움(4기 정책과제 관련 시민단체 의견)

※ 장기적으로 각 방송사의 매체별·권역별 재허가 심사기간을 통일하여 심사를 통합하는 방안 검토(반면, 정부의 방송사 제재 권한 및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有)

※ 단, 심사결과에 따라 차별 조치할 수 있도록 허가단위는 방송국단위로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존재

○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폐쇄성 개선)

－ 실적과 계획 평가과정에서 시청자와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할 실질적 방안을 수립하는 계획이 부재하여 사업자의 입장만 놓고 평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심사 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폐쇄성을 극복할 필요가 있음(4기 정책과제 관련 시민단체 의견)

－ ‘국민에 의한 심사평가 확대’를 방향으로, 시청자 참여 접근성이 떨어지는 기존의 시청자 의견수렴 절차를 개선\*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객관화\*\*하는 등 심사 평가에 직접적으로 반영 가능한 방안 모색 필요

\* 불특정 다수 대상 설문조사, ‘지상파 일번지’(언론개혁시민연대에서 운영하는 지상파불만처리대행사이트) 연계 등

\*\* 의견접수 양식을 5단계 선택문항을 제시하여 객관적 지표로 평가하게 하고, 불만사항 등 기타의견은 부대의견으로 접수하는 것으로 처리

- 또한, 대표자 의견청취시 대표자 공석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대표자의 대리자 참석 또는 서면 의견청취 진행 등의 대안과 그에 따른 허용 절차(ex, 대표자 불참시 의견청취일 최소 1주일전 방통위에 요청 및 심사위원회의 승인 얻을 것) 등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검토
-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기준 강화)
  - 신청서 표준화, 신청서 작성지침의 사전 고지, 신청서 작성 관련 방송사 담당자 교육 필요('17년 재허가)
  - 사업계획서 작성 당시 경영진 징계·해임, 과징금 실질화 등 위한 법개정 필요 ('17년 재허가)
- (사업계획서 약속 내용 충실히 점검하는 심사기준 필요)
  - 직전 사업계획서 제시 내용을 빠짐없이 이행했는지 충실히 점검하는 심사기준 마련이 필요함(지상파재허가 세부기본계획 의결, '16. 5월 고삼석 위원)
  - ※ 재허가 심사사항 중 “기타 허가 또는 승인 당시의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가 명시되어 있어 이행여부를 심사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
- (재무적 안정성 평가 관련 지표 개선)
  - 자율경영 방송사보다 운영비 전액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을 받아 수입과 지출을 일치(균형예산)시키는 방송사가 하위 등급 받는 불합리 개선 필요('17년 재허가)
  - 지상파사업과 PP경영 방송사(종교방송 등)는 사업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제출하여 사업별로 재무적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함('17년 재허가)
- (방송의 공적 책임 관련 심사 강화)
  - ‘제작자율성 보장 여부’ ‘노사간 합리적 협의시스템 구축 여부’ 항목을 신설하고

배점 부여 필요(방송평가 비중 축소와 동시 진행)(17년 방송정책기획위 보고)

※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중점 심사사항에 포함시켜 기존 항목을 통해 심사 추진함

- '방송의 공적 책임' 등 사회적 책임 관련 세부 심사항목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17년 방송정책기획위 보고)

- '보도·제작의 자율성과 독립성, 공적책무 이행 의지', '편성위원회 기능 활성화' '부당 해직·징계 방지' 등을 엄정히 심사(제4기 방통위 정책과제)

- 공영방송사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 및 예산지출 적정성, 방송사 이사회 의사결정의 적정성, 방송사 시청자위원회 구성의 적절성(17 언론노조)

- 이사회, 대주주, 경영진에 의한 방송편성 자율성 침해 정도(17 언론노조)

- 지역제작 프로그램 편성의 적절성, 지역방송의 적정인력 유지 여부(17 언론노조 제안서)

- 주주로부터의 독립경영 및 자율성 제고 실적, 인력운용 및 조직개편의 적절성, 징계·전보·해고 등의 인사조치에 대한 적정성(17 언론노조 제안서)

- 지역방송 투자계획 및 실적, 지역MBC의 독립경영 및 의사결정 제도, 경영합리화 지원방안 마련 등의 이행실적(17 언론노조 제안서)

○ (재허가 취소가 되는 과락항목 추가)

- 지상파방송 재허가도 종편처럼 항목별 과락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지상파 재허가 세부기본계획 의결, '17. 3. 김재홍 부위원장, 4기 위원 업무보고)

- '방송발전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준수 여부' 항목은 특정 점수이하일 경우 재허가 취소가 가능토록 재허가 조건 강화 필요(17 언론노조 제안서)

- 개별 심사사항 점수가 40% 미달이 되어야 과락이 되는 현행 규제는 일반적인 과락기준인 60점에 비해 너무 느슨하여 강화할 필요가 있음(17. 11. 방통위 MBN 재승인 의결, 위원장, 표철수, 고삼석 위원)

○ (외주 상생제도 강화)

- 방송사는 방영권, 제작사가 저작권을 갖는 시스템 정착을 재허가 및 재승인시 더 크게 반영할 필요('17. 11. 방통위 MBN 재승인 의결, 위원장)

○ (특정 항목에 대한 내부종사자 평가서 및 진술 청취)

- 별도의 심사항목 추가가 필요한- 이사회, 대주주, 경영진에 의한 방송편성 자율성 침해 정도, - 주주로부터의 독립경영 및 자율성 제고 실적, - 인력운용 및 조직 개편의 적절성, - 징계, 전보, 해고 등의 인사조치에 대한 적정성, - 지역MBC의 독립경영 및 의사결정 제도, - 경영합리화 지원방안 등의 이행실적 등의 항목은 노조 등 내부종사자 평가서 제출과 의견진술 필요항목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17 언론노조 제안서)

○ (방송평가 비중 축소 및 변별력 강화)

- 방송평가가 40%나 차지하고 방송평가 점수의 사업자별 변별력도 낮아 재허가 심사위원회 평가결과의 실효성이 낮아짐(4기 위원 업무보고, '17년 재허가-재승인 심사위원회, '17년 재승인 의결 전체회의)
- 방송사업자 간 변별력 부족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있으며 평가항목과 배점 등의 조정으로 평가의 변별력을 강화하여 평가제도가 합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방송평가 결과 의결, '17. 11월)

○ (이행실적 비중 확대)

- 계획은 화려한 말잔치가 가능해서 실질평가가 되지 못할 우려가 크므로 계획 대비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비중을 더 높여야 함(4기 위원 업무보고)

○ (임시허가제 도입 등)

- 시청권 침해 및 사회혼란 등을 이유로 조건부재허가 결정이 일반적인데 문제가 큰 방송사는 1년 기한의 임시허가제를 도입하여 1년 후 재허가 심사를 다시 할 필요가 있음(4기 위원 업무보고)

※ 재허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나 최소허가 유효기간 제도를 둔  
입법취지에 반할 수도 있음

- 재허가·재승인 조건 위반 시 엄정 제재 조치를 하겠다며 조건부 허가의 사후  
계획만을 염두에 둘 뿐, 허가·승인의 취소 기준과 방식, 불허 이후의 대책은  
부재(4기 정책과제 관련 시민단체 의견)

○ (조건부 재허가와 조건이 부가된 재허가 간 차별성 부재)

- 기준점(650점) 미만으로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방송국과 조건이 부가된 '재허가'를  
받은 방송국에 가해지는 제재의 차이가 없거나 체감되지 않음

- 차별성을 위한 높은 수위의 제재방안(ex, 경영진 문책, 과징금 부과, 수익금 일부  
사회환원 조치 등)를 적극 검토하여 현실성 있는 재허가 거부의 대안 마련 필요

- 심사과정 및 심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재허가 조건 부과, 이행점검 등) 수행에  
있어, 방송사로 하여금 수용과 이행의 의무 부여 등 법적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 방지 필요

※ '17년 DMB 재허가 심사 결과 부가된 재허가 조건에 대해 일부 방송사의 경우  
법적 근거 미비를 지적한 바 있음

나. 종편·보도 재승인 심사

○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제고 강화)

- 종편PP의 오보·막말·편파방송 심의제재 감소 등 품격제고 조건 부가(제4기  
방통위 정책과제)

다. 공동체 라디오 재허가 심사

○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제고 강화

- 방송의 규모 및 운영방식이 기존 지상파와는 현격히 다른 구조와 운영 방식을  
보이고 있는 데도 배점만 다를 뿐 동일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있어 공동체

라디오에 적합한 별도의 심사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과제로 설정해야 함  
(4기 정책과제 관련 시민단체 의견)

〈표 3-2〉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심사기준('15. 4)에 따른 개선사항 비교

구 분	기 준('15년)	개선사항('16년~)
지상파TV	10개 심사사항 27개 심사항목	6개 심사사항 14개 심사항목
지상파R	10개 심사사항 27개 심사항목	6개 심사사항 13개 심사항목
DMB	10개 심사사항 25개 심사항목	6개 심사사항 16개 심사항목
공동체R	8개 심사사항 16개 심사항목	6개 심사사항 12개 심사항목
종편PP	9개 심사사항 17개 심사항목	6개 심사사항 14개 심사항목
보도PP	9개 심사사항 17개 심사항목	6개 심사사항 14개 심사항목

## 2. 기존 연구에서 지적된 문제점

### 가.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등의 개념 모호

-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과 같은 심사항목은 그 추상성이 매우 높아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할 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계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정성적 평가항목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
- 실제 재허가 심사에서는 방송의 공적책임 등의 항목을 단일한 기준이 아니라 몇 개의 세분화된 중단위 항목으로 구별하여 평가하고 있음
- 재허가 심사 시마다 동일하지는 않지만, 공익성 강화 계획 이행 내용(실적과 현황),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실적, 공적책임 등의 실현계획, 재허가기간 주요 현안에 대한 공적책임의 종합적 평가, 협찬운영의 적정성, 관계법령 위반 사례 등의 중단위 항목을 통해 평가하고 있음.
- 하지만, 공적책임에 대한 종합평가와 같은 항목은 그 자체로서도 명확한 기준을 갖고 평가하기 어려운 성격을 지니고 있음. 공적책임 등과 관련된 항목에서는

재허가 심사마다 최소 3개에서 최대 5개까지 별도 배점이 부여되는 중항목을 두고 있음. 대항목의 추상성이 높은 경우, 중단위 항목을 많이 두어 가급적 계량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음

〈표 3-3〉 방송의 공적책임 등에 관한 중단위 항목의 평가기준 현황

항 목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공익성 강화 계획 이행내용(실적/현황)	45	40	40	50	100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실적	10	10	10	20	-
공적책임·공공성·공익성관련 실현계획	45	30	30	40	50
재허가기간 주요현안 공적책임 종합평가	-	-	-	40	-
협찬운영의 적정성	-	20	20	-	-
관계법령 위반 사례	-		-	감점	감점
합계	100	100	100	150	150

출처: 송종현·윤성욱(2017)

#### 나. 재허가 심사절차의 효율성 문제

- 현행 재허가 심사는 방송국 단위의 재허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동일한 방송 사업자가 많게는 백수십개의 방송국의 보유하고 있을 경우 심사의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는 문제 발생
- 가령 지난 2010년 재허가 심사에서 KBS는 총 131개의 방송국 단위로 재허가 심사를 받았으며, MBC도 지역MBC별로 5개의 방송국 단위 재허가 심사를 받은 바 있음. 이에 따라 개별 방송국 단위로 심사를 할 때 점수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점을 감안해 사업자 단위로 재허가 심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제기
- 심사절차의 효율성 문제뿐만 아니라 방송국 단위로 심사를 할 경우, 동일 사업자 소유의 방송국이 서로 다른 재허가 기간을 부여받는 경우도 발생. 가령 지난 2010년 재허가 심사에서 교통방송의 경우 원주는 5년의 재허가 기간을 받은 반면, 나머지 방송국은 4년의 재허가 기간을 받아, 향후 두 번의 재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

- 심사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문제 제기. 재허가 심사위원회가 구성되면 통상 9인 내외의 심사위원들이 전체 방송국을 대상으로 심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수백개에 이르는 방송국을 1~2주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충실하게 심사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
- 방송사업자의 입장에서 방송국 단위로 재허가 심사를 받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심사위원회 운영과정의 효율성 제고 가능

#### 다. 재허가 기간의 문제

- 현행 전파법 제22조제1항에서는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을 7년 이내의 범위로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은 방송국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음. 다만 동조 제4항에서는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허가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상파방송사들은 현재와 같이 재허가 기간을 5년 이내로 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재량에 의해 3년 재허가가 가능할 경우 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것은 물론 방송사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여 안정적인 방송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청자 복지증진에도 역행한다는 주장
- ※ 관련법의 개정이 재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해외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어느 정도 유사한 수준으로 맞추려는 취지도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파법 시행령을 재개정하여 허가유효기간을 7년으로 확대하고 2년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재허가 유효기간을 5년 이상 보장해야 한다는 것



라. 재허가 심사서류 간소화 문제

- 기존 재허가 심사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증빙자료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도 있음. 방송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매년 실시되는 방송평가와 더불어 3년~5년 단위로 돌아오는 재허가 심사를 위한 서류 작성에 상당한 행정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
- 방송평가는 물론이고 일상적으로 각종 통계자료를 주기적으로 주무부서에 제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허가 심사에서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기보다는 양식의 간소화나 기존 제출 자료로 갈음하는 등의 개선 필요

마 재허가 조건 부여 문제

- 방송협회는 현재 재허가 심사에서 부과되고 있는 일부 조건이나 권고는 개별 방송사의 경영이나 운영의 자율성을 고려하지 않거나 방송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방송사 경영이나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의견 제시
- 재허가시 조건은 방송법 틀 내에서 법령 준수나 위원회가 구현하고자 하는 구체적 정책목표 이행 등 명확하고 보편타당한 근거를 토대로 최소한으로 부과할 필요

바. 매체 특성 반영 부족

- 방송법의 각종 규제는 매체별·채널별 특성을 감안해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방송법 제32조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조항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의 내용과 기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매체별·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심의규정 적용시 매체별·채널별 특성을 감안해 차별적인 규제수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 텔레비전 방송과 라디오 방송을 동일한 기준으로 재허가 심사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있음. 가령 음악FM이나 교통방송과 같은 전문편성 라디오에게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한 시사토론 프로그램 편성계획을 제출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음(성육제 등, 2011)
- 지상파방송사의 이해를 반영하고 있는 방송협회에서는 국내 라디오 방송사는 KBS, KBC 등 지상파 TV방송사가 운용하는 채널과, CBS, 극동 등 종교재단에서 운용하는 채널과 또 국악, 교통방송 등 정부에서 특수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채널 그리고 경기, 경인 등 민간에서 운용하는 채널 등 다양한 채널이 있는데, 이들 방송 채널 성격이 다르므로 심사 기준 역시 채널별 특성에 맞게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 제시한 바 있음
- 2010년에는 방송법 일부개정안도 발의된 바 있음. 정부입법 형태로 발의된 해당 개정안에는 제10조제1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심사 기준 중 매체별, 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음. 동조 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별 세부 심사항목, 심사와 공표에 필요한 절차, 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는 내용을 제시한 바 있으나, 개정 법률안은 오래동안 국회에 계류되다가 파기되었음
- 이외에도, 전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방송사와 지역단위의 방송사를 동일한 기준이나 배점으로 평가하는 것도 적절치 않음
- 텔레비전 방송과 라디오방송의 심사기준 차별화와 관련해서는, 라디오방송에 적절하지 않은 항목을 평가기준에서 제외 가능. 라디오방송에 대해서는 민주적인 여론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수급계획이나 편성실적 항목, 재난방송과 관련된 평가항목, 장애인 시청지원에 관한 항목 등 제외 가능

사. 방송평가와의 중복 문제

- 재허가 정책과 관련해 가장 빈번하게 지적되고 있는 문제는 방송평가와의 중복성이 높다는 지적이라 할 수 있음. 방송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매년 방송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허가 기간이 끝날 때마다 유사한 자료를 제출하는 행정력의 낭비가 있다는 문제 제기
- 방송평가와 중복성이 높음에 따라, 방송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사업자는 재허가 심사에 포함되는 방송평가 점수로 인해 이중적으로 평가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

〈표 3-4〉 방송평가 및 재허가(재승인) 현황

구분	방송평가	재허가(재승인)
법적 근거	○ 방송법 제31조	○ 방송법 제17조(재허가)
도입	○ 2000년	○ ~1999년: 정통부 허가 (문화부 사전협의, 전파법) ○ 2000~2007년: 재허가 추천(방송위) → 재허가(정통부) ○ 2008년~: 재허가
평가 대상	○ 지상파(방통위) ○ SO, 위성, 중편·보도·홈쇼핑PP(방통위)	○ 지상파, 종편·보도PP(방통위), ○ SO, 위성, 홈쇼핑PP(과기부)
평가 시기	○ 매년 실시	○ 3년~5년
평가 체계	① 사업자 자료 제출 ② 방송평가지원단 ③ 방송평가위원회(법정위원회) ④ 방송통신위원회	① 사업자 자료 제출 ② 재허가심사위원회 ③ 방송통신위원회
평가 기준	○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 방송법 제10조, 방송법 제17조
평가 배점	○ 총 900점(지상파TV) ○ 평가영역 - 내용(350점): 프로그램 우수도, 심의 규정 준수, 오보방지 등	○ 총 1,050점(평가 후 1,000점 환산) ○ 심사사항(대항목) - 방송평가(400점) - 공적책임·공정성(250점)

구분	방송평가	재허가(재승인)
평가 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성(350점): 편성관련규정 준수, 사회기여프로그램 편성 등</li> <li>- 운영(200점): 재무건전성, 방송발전 노력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성(150점)</li> <li>- 경영·재정·기술(100점)</li> <li>- 방송발전·법령준수(100점)</li> <li>- 기타사업 수행(50점)</li> </ul>
평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척도에 따른 계량평가</li> <li>○ 심사지원단 평가 후 방송평가위원회에서 심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계량 + 계량(방송평가, 재정능력)</li> <li>○ 비계량 항목은 심사위원 개별 평가 후 평균</li> </ul>
평가 기준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기준이 고시로 되어 있어 개정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심사위원회에 세부평가기준 의결</li> </ul>
예측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평가 세부기준 공개(홈페이지)</li> <li>○ 평가기준에 맞게 사전 준비</li> <li>○ 자체 평가 예측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공고시 심사사항(대항목) 및 배점 공개</li> <li>○ 세부심사평가기준 및 방법은 백서를 통해 사후 공개</li> <li>○ 세부평가사항 사후 공개, 재허가시마다심사평가기준 변경 등으로 사업자 예측 가능성 부족</li> </ul>
정책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허가 심사시 평가 반영(방송법)</li> <li>○ 자율규제 효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부과- 관리·감독에 활용</li> <li>○ 재허가 취소</li> </ul>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항목별 점수, 총점 공개</li> <li>- 사업자별 상호 비교 평가 효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허가 여부,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재허가 총점(방송평가점수 + 재허가평가점수) 공개- 사업자별 주요 문제점, 상호 비교 평가 효과</li> </ul>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자료

- 방송평가와 (재)허가 심사기준의 유사 항목
  - 외형상 항목이 유사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기준 및 적용 방법(실적/계획 평가여부 및 배점, 방송평가 적용기간 제외) 등이 다르다는 점 감안 필요

〈표 3-5〉 방송평가와 (재)허가 심사기준

구분	방송평가(2016년)	2016년 지상파 재허가 평가기준
자체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심의 운영현황 및 결과 종합평가</li> <li>－ 전담부서 설치여부</li> <li>－ 제작물 심의비율</li> <li>－ 제작진 참여여부</li> <li>－ 방통위 심의제재 사전지적 비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심의제도 운영 현황(기구, 인력, 심의절차, 방법, 심의실적 등)</li> </ul>
시청자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li> <li>－ 편성시간대</li> <li>－ 시청자평가원 운영</li> <li>－ 평가원 운영보고서</li> <li>－ 시청자평가시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청자 평가 관련</li> <li>－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 현황</li> <li>－ 시청자 평가원 운영 현황</li> <li>－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편성 현황</li> </ul>
시청자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청자 의견반영 종합 평가</li> <li>－ 시청자 의견반영 전담부서 설치 여부</li> <li>－ 의견반영 결과정리 제출여부 및 평가</li> <li>－ 의견반영 결과정리 공개 여부</li> <li>－ 방통위에 접수된 시청자 의견처리의 적절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청자 민원처리 현황의 적정성</li> <li>－ 시청자 민원처리 전담 부서 현황</li> <li>－ 시청자 민원처리 절차</li> <li>－ 자체 민원처리 결과 및 처리 적정성</li> <li>○ 시청자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li> <li>－ 방송통신위원회 민원</li> <li>－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li> <li>○ 시청자 의견수렴 관련 홈페이지 등 운영 현황</li> </ul>
시청자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청자위원회 운영 현황 및 결과 종합 평가</li> <li>－ 매월 정기회의 개최 여부</li> <li>－ 회의록 공개 여부</li> <li>－ 시청자위원 제시의견 활용 여부</li> <li>－ 월간 운영실적 제출 및 보고시한 준수 여부</li> <li>－ 시청자위원회 운영 만족도 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적</li> <li>－ 시청자위원회 운영 기본 방향</li> <li>－ 시청자위원회 운영 현황</li> <li>－ 시청자위원회 방송프로그램 평가 및 반영 실적</li> </ul>
수상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종합 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수상실적 평가</li> </ul>
직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적자원 개발 투자 평가</li> <li>－ 매출액 대비 교육비 비율</li> <li>－ 1인당 교육비</li> <li>－ 직무능력 향상 교육 시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원 교육 투자 현황 및 세부 실적</li> </ul>

구분	방송평가(2016년)	2016년 지상파 재허가 평가기준
기술·콘텐츠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기술 및 방송콘텐츠 투자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신기술 대응에 따른 투자, 인증 제품 투자, 시설운용 및 유지보수 투자 등 평가</li> <li>- 방송매출액 대비 방송콘텐츠 투자비율 평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 투자 현황 및 세부실적</li> <li>○ 방송프로그램 투자 실적</li> </ul>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자료

아. 실적과 계획 구분의 모호함

- 기존 재허가 심사에서 개별 항목 내에 계획과 실적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방송평가와 시정명령 횟수와 불이행 사례, 그리고 허가시 부과된 조건과 권고 이행 여부 등 3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실적과 계획으로 구분이 가능함. 공적책임 등과 관련된 심사항목의 경우, 지난 허가 또는 재허가 심사에서 밝힌 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평가함과 동시에, 향후 부여되는 재허가 기간 동안의 실행 계획을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표 3-6〉 재허가 심사 항목의 실적과 계획 구분 가능성

	항 목	실적	계획
1	방송평가	○	
2	공적책임 등	○	○
3	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적절성	○	○
4	지역사회문화적 기여	○	○
5	경영 적정성	○	○
6	재정 및 기술적 능력	○	○
7	방송발전 지원계획과 이행여부	○	○
8	시청자 권익보호	○	○
9	시정명령 횟수와 불이행 사례	○	
10	허가시 부과 조건 권고 이행 여부	○	
11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ex. 디지털 전환)	○	○
12	방송광고 판매지원 정도	○	○

출처: 송종현·윤성욱(2017)

- 2009년까지는 실적과 계획을 구분하지 않은 항목이 많은 편이었으나, 2010년부터는 기술력 평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실적과 계획을 별도 배점이 부여되는 중단위 항목으로 설정하고 있음

# 제 4 장 제도개선 주요 내용 및 사전 기본계획(안)

## 제 1 절 제도개선 주요 내용

### 1. 기본 방향 및 과제

#### < 목 표 >

**합리적인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통해  
방송의 공적책임 확보**

개선 방향	추진 과제
재허가·재승인 결정기준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심사점수별 차등해인센티브·페널티</li><li>○ 심사사항(대분류) 과락 기준 강화</li></ul>
재허가·재승인 심사기준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매체별 심사기준 명확화</li><li>○ 방송평가 변별력 확대외주상생제도 평가 등</li></ul>
재허가·재승인 심사절차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내부종사자 의견진술 기회 부여</li><li>○ 시청자 의견 수렴방식 개선</li><li>○ 사업계획서 분량 제한</li></ul>



## 2. 주요 내용

### 가. 재허가/재승인 결정기준 명확화

#### 1) 심사점수별 차등화

- (현황 및 문제점) 심사점수의 차이에 따른 차등(인센티브나 페널티) 없음
  - 예를 들어, 650점 이상을 받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조건'과 650점 이하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조건'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
- (개선방안) 심사점수에 따른 유효기간, 조건, 이행점검 주기 등의 차등화
  - (700점 이상) 법정 최대 유효기간(5년) 부여, 사업계획서 이행 관련 위주 조건 부과, 조건 이행점검 주기 완화(2~3년, 유효기간 내 1~2회)
  - (650점~700점) 유효기간(4년) 부여, 사업계획서 이행관련 위주 조건 부과, 통상적인 조건 이행점검 주기(1년)
  - (650점 미만) 조건부 재허가/재승인, 최소 유효기간(3년) 부여, 사업계획서에 없는 추가 조건 부과, 조건 이행점검 주기 단축(6개월)
- ※ 한 방송사가 소유한 여러 방송국의 심사점수가 서로 다른 경우, 심사위원회 의견을 고려하여 방통위에서 유효기간 조정 가능(동일 기간 부여 가능)

〈표 4-1〉 심사점수별 차등화 방안

심사점수	유형	유효기간	조건 부과	이행점검 주기
700점 이상	재허가/재승인	5년	사업계획서 이행관련 조건 위주	완화 (2~3년)
650점~700점		4년		정상 (1년)
650점 미만	조건부 재허가/재승인	3년	사업계획서 이행관련 조건, 추가 조건 부과	단축 (6개월)

2) 심사사항(대분류) 과락 기준 강화

- (현황) 일반 심사사항(대분류)\*의 과락(심사점수가 배점의 40% 미달) 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으며, 중점 심사사항\*\*의 과락(배점의 50% 미달) 시, 조건부 재허가(지상파TV) 또는 조건부 재승인/재승인 거부(중편/보도PP) 가능
- \* 재허가/재승인 심사는 심사사항(대분류)과 심사항목(중분류)으로 구성
- \*\*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 사회, 문화적 필요성',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2개 심사사항

〈표 4-2〉 재허가 심사사항(대분류) 예시 - 지상파TV

심사사항(대분류)	배점 (1000점)
1. 방송평가	400점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250점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150점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100점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여부	100점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 (문제점) 일반 심사사항의 과락 기준(40%)이 사회적 통념에 비취볼 때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으며, 중점심사사항의 과락에 따른 조치가 매체별로 상이함\*
- \* 지상파TV(조건부 재허가) vs 중편/보도PP(조건부 재승인 + 재승인 거부)
- (개선방안)
  - 사회적 통념에 맞춰 일반 심사사항의 과락 기준을 상향조정(40%→50%)
    - ※ 중점 심사사항 및 중점 심사사항 과락 기준은 현행 유지(2개 심사사항, 50%)
  - 지상파TV의 중점심사사항 과락에 따른 조치를 중편/보도PP와 동일하게 설정 (조건부 재허가 + 재허가 거부)

나. 재허가/재승인 심사기준 합리화

1) 매체별 심사기준\* 명확화

\*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심사기준은 심사사항(대분류), 심사항목(중분류)을 의미

□ 심사사항(대분류) 및 배점 유지

○ 기존 심사사항 체계\* 및 배점은 심사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유지

\* 방송법에 규정된 심사기준에 근거하되, 유사한 항목을 6개 심사사항(대분류)으로 통합

〈표 4-3〉 심사사항 및 매체별 배점

심사사항	지상파방송				PP	
	TV	R	DMB	공동체R	종편	보도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400	400	400	-	400	400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250	250	200	350	210	260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150	150	120	200	190	160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100	100	180	350	100	80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100	100	100	100	100	100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재허가/재승인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전체 배점의 10% 이하에서 반영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매체별 심사항목(중분류) 명확화 및 차별화

○ (현황) 공통 심사항목과 매체별 차별화된 심사항목으로 구분

- (공통) 방송평가, 공적책임, 권익보호, 사회문화 기여, 프로그램 편성, 공익성 프로그램, 경영, 재무, 기술투자, 방송발전 지원, 법령위반, 조건/권고 이행 등
- (특성반영) 방송광고판매 지원(지상파TV), 프로그램 제작사협력, 유료방송시장 활성화(종편/보도PP), DMB 전용프로그램 제작, 편성, 채널구성, 난시청해소(DMB) 등

〈표 4-4〉 심사사항 및 심사항목

심사사항(대분류)	심사항목(중분류)
1. 방송평가	①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②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③ 시청자/청취자 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④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⑤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실적과 계획의 적정성 ⑥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 - 방송프로그램 수급, 제작·협력의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종편/보도PP) - DMB전용 프로그램(재)제작 및 확보계획의 적정성(DMB) - 채널구성 계획 이행여부 및 계획의 적정성(DMB)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⑦ 경영·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⑧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⑨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 재무적 건전성(공동채R) - 난시청 해소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DMB)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⑩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⑪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 ⑫ 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 ⑬ (재)허가/(재)승인 시 부가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 -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광고판매 지원 이행정도(중앙 지상파TV) - 방송산업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종편/보도PP)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재허가/재승인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전체 배점의 10% 이하에서 반영

※ 음영은 매체별 특성 반영한 심사항목

○ (문제점)

- (공익성 개념의 중복과 모호함) 공익성 실적이 2개 항목\*에 중복적으로 명기, 두 항목간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음

\* ②번(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⑥번(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 프로그램의 편성(제작, 구매 등)과 제작 투자에 대한 평가가 혼재되어 있음

- (투자 개념의 중복과 모호함) 투자 개념이 3개 항목\*에 중복적으로 나타남
  - \* 명시적으로는 ⑦번과 ⑨번, 실질적으로는 ⑤번에서도 심사
- (지역방송사 특성 드러나지 않음) 지역 프로그램 편성 실적 평가 등 지역 방송사에 적합한 심사항목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음
- (개선방향) 항목 간 개념의 중복 해소, 지역방송사 특성 반영
  - (공익성 개념의 중복 해소 및 조작적 정의 명확화) 공익성 심사는 프로그램 편성\* 위주로, 공적책임·공정성 심사는 제도적 장치\*\* 위주로 심사
    - \*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 장애인방송, 노약자/다문화가정/외국인 등 소수자 방송, 비상업적공익광고, 재난방송 편성실적 등
    - \* 프로그램 품질 제고 노력(심의제제 건수 감축 등),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 노력, 선거관련 방송 공정성, 객관성 확보 노력, 편성 규약 제정, 공표 실적 등
  - (편성과 제작투자의 평가 구분) 편성(제작, 구매 등) 수급계획과 제작 투자가 혼재되어 평가받지 않도록 수급 계획과 제작투자 항목을 구분\*
    - \* 종편PP는 기존 평가항목(수급, 제작, 협력)을 제작투자로 대체하고, DMB는 기존 평가항목(DMB전용 프로그램(재)제작)으로 같음
  - (지역방송사 특성 반영) 지역 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실적 평가 신설
  - (종편PP 균형적 프로그램 편성 평가 구분) 심사기준 명확화를 위해, 기존 평가 항목(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에서 별도 구분\*
    - \* 세부 심사기준에는 균형적 편성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으나, 다른 항목들과 혼재되어 심사
  - (투자 및 경영 개념의 조작적 정의 명확화) 투자는 프로그램 제작투자외 기술 투자 위주로 심사하고, 경영은 인력운영, 재원조달, 중장기 비전 위주로 심사

〈표 4-5〉 심사항목 현행 vs 개정(안) 비교

현행- 심사항목(중분류)*	개정(안)- 심사항목(중분류)*
① 방송평가위원회 <b>방송평가</b>	① 방송평가위원회 <b>방송평가</b>
② <b>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b>	②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③ 시청자/청취자 <b>권익보호</b>	③ 시청자/청취자 권익보호
④ <b>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b>	④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⑤ 방송프로그램의 <b>기획·편성·제작</b>	⑤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구 매 등 수급
⑥ <b>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b>	⑥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
	⑦ 방송프로그램의 제작투자
- 방송프로그램 수급, 제작·협력(중편/ 보도PP) - DMB전용 프로그램(재)제작 및 확보 (DMB) - 채널구성 계획 이행(DMB)	- 방송프로그램 수급, 제작·협력(중편/ 보도PP) - DMB전용 프로그램(재)제작 및 확보 (DMB) - 채널구성 계획 이행(DMB) - 지역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 작(지역 방송사 TV, R) - 방송프로그램의 균형적 편성(중편PP)
⑦ <b>경영·투자</b>	⑧ <b>경영·투자 관리 및 비전</b>
⑧ <b>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b>	⑨ <b>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b>
⑨ <b>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b>	⑩ <b>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b>
- 재무적 건전성(공동체R) - 난시청 해소(DMB)	- 재무적 건전성(공동체R) - 난시청 해소(DMB)
⑩ <b>방송발전을 위한 지원</b>	⑪ <b>방송발전을 위한 지원</b>
⑪ <b>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b>	⑫ <b>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b>
⑫ <b>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b>	⑬ <b>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b>
⑬ <b>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b>	⑭ <b>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b>
- 방송광고판매 지원(중앙 지상파TV) -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중편/보도 PP)	- 방송광고판매 지원(중앙 지상파TV) -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중편/보도 PP)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 음영은 매체별 특성 반영한 심사항목

## 2) 방송평가 변별력 확대(외주 상생제도 평가 등)

### □ 방송평가 변별력 확대(비중 유지)

- (현황 및 문제점) 방송평가가 재허가/재승인 심사점수 전체 배점의 40%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별 평가점수의 차이\*가 크지 않아, 재허가 심사의 전반적인 실효성이 떨어짐

\* 2016년도 종편PP 평가점수: TV조선(586.00), JTBC(597.57), 채널A(570.47), MBN(583.72)

- (개선방안) 전체적인 심사의 정량/정성, 계량/비계량의 균형을 위해, 기존 방송평가의 비중은 현행 유지하되, 변별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 '18. 11. 28. 방송평가 규칙 개정: 법령위반 등 감점항목의 배점방식 개선(기본 배점 없이 총점에서 직접 감점), 총점/항목별 우선순위 조정, 재난방송 등 실적의 상대평가 구간 세분화 등 변별력 확보 노력

- 방송평가의 도입 취지가 재허가/재승인 심사의 자의적 요소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비계량 심사점수가 높은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방송평가의 비중을 낮추는 것은 재허가/재승인 심사의 자의성 논란\*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음

\* 재허가/재승인 심사항목 중 방송평가를 제외해도, 비계량/정성평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허가/재승인 심사의 실효성을 떨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방송평가라는 주장은 논거 부족

### □ 방송 평가를 통한 외주상생제도 평가

- (현황 및 문제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방송사의 외주 제작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사와 외주사의 상생을 제도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개선방안) 방송평가 규칙 개정('18. 11. 28)을 통해, 외주상생제도 평가

\* 기존 평가항목('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 평가)에 '방송사와 외주제작사/독립창작자 간 상생협업체 등 운영 적정성' 항목 추가

〈표 4-6〉 방송평가 중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 평가’ - 세부항목

세부항목	배점(30점)
	지상파TV(중앙), 종편PP
공정거래 관련 가이드라인 및 실행계획 수립/실시 적정성	5점
표준계약서 활용의 적정성	10점
외주제작인력의 상해·여행자보험 가입 여부 확인 적정성	7점
방송사와 외주제작사/독립제작자 간 상생협의체 등 운영 적정성	8점

다. 재허가/재승인 심사절차 합리화

1) 내부종사자 의견진술 기회 부여

-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재허가/재승인 심사절차 중 ‘의견청취’의 경우, 주로 경영진 (최대주주, 대표이사, 편성책임자 등) 위주로 진행되어, 노사가 대립하는 이슈\*의 경우, 내부 종사자의 입장이 개진될 기회가 없음

\* 편성 자율성 침해, 인력운용 및 조직개편의 적절성, 징계·해고 등 인사조치 적정성 이슈

- (개선방안) 특정 이슈에 관한 내부 종사자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심사위원회가 합의한 경우에 한해, 경영진의 의견청취와 함께 내부 종사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

2) 시청자 의견 수렴방식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우편, Fax, E-mail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시청자 의견 수렴 방식에 대한 대표성 논란\*

\* ‘국민에 의한 심사평가’(불특정 다수 대상 설문조사) 의견 제시(시민단체)

- (개선방안)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조화된 설문 이용해서 시청자 의견 수렴

\* 기본적으로 홈페이지 유도하되, 기존의 우편, Fax, E-mail 의견접수 배제하지 않음



- 의견 접수 양식을 설문문항\*으로 제시하고, 5점 척도로 응답(전산화 필요)하도록 하며, 결과 값을 심사에 직접 반영
  - ※ 시청자/청취자의 보다 정확한 의견 개진을 도울 수 있는 정보(ex. 실적 및 계획을 담은 사업신청서 요약) 제공 필요
- 대표성 있는 표본집단 대상 설문조사 실시도 가능하나, 특정한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의사표출의 의지가 없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강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해외 사례 찾아보기 어려움)

### 3) 사업계획서 분량 제한

- (현황 및 문제점) 사업계획서의 분량 제한이 없어, 사업자와 심사자 모두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소모\*
  - \*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계획서의 외형을 부풀릴 유인이 크며, 심사자 입장에서는 심사 분량의 증가로 심사의 효율성이 급격하게 떨어질 개연성 높음
- (개선방안) 사업계획서 전체 분량을 제한(ex. 본문 300페이지\*)함으로써, 사업계획서 작성의 완성도와 심사의 효율성 제고
  - \* IPTV 재허가 심사 사례 참고
    - ※ 본문 300페이지 제한은 본사/중앙방송사에 한하며, 지역방송국의 사업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경우, 1개 방송국 당 분량 추가(30-50페이지)

## 제 2 절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안)

### 가. 재허가·재승인 대상

연도	지상파 텔레비전방송 지상파 라디오방송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종합편성· 보도전문 방송
19년	12월(지역MBC 13개사, 민방 8개사 등 33개사)	12월(안동MBC, 광주방송, TBC, G1, 제주방송)	-
20년	12월(KBS, MBC, SBS, EBS, 지역MBC 3개사 등 10개사)	12월(KNN, 수도권KBS, MBC, SBS, YTNDMB, 한국DMB, 유원미디어)	3월(YTN, 연합뉴스TV) 4월(TV조선, 채널A) 11월(JTBC, MBN)
21년	12월(CBS, 극동방송)	-	-

- ※ '18년도 재허가 대상인 지상파 라디오 방송(국악방송, TBN) 및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지역KBS, 대전방송, 춘천MBC 등 7개사)은 허가 유효기간 미정
- ※ 공동체라디오FM 7개사(관악, 마포, 성남, 성서, 영주, 광주, 공주)는 '22년도 심사 예정
- ※ 지상파 초고화질(UHD)텔레비전방송은 특수성에 대한 별도 고려가 필요하므로 대상사업자에서 제외

### 나.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자격조건에 적합하고, 심사대상 사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자가 없는 인사 9~15인으로 구성
- 구체적인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은 당해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세부계획(안) 수립 시 결정
  - 심사위원장은 상임위원들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이 결정하고,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

구 분	분 야	비 고
심사위원	심사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또는 외부전문가
	방송·미디어 분야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법률 분야	변호사 또는 법학 교수
	경제·경영·회계 분야	관련학과 교수, 회계사, 관련분야 종사자
	기술 분야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시청자·소비자 분야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방통위 사무조직	담당 과장

#### 다. 심사항목 및 배점

- 방송법에 규정된 심사기준에 근거하되, 심사사항의 취지 및 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사한 항목을 6개 심사사항(대분류)으로 통합

심사사항(대분류)	비 고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방송법 제17조제3항제1호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법 제10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17조제3항제3호·제4호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계획의 적절성	방송법 제10조제1항제2호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방송법 제10조제1항제4호·제5호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방송법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17조제3항제2호·제5호·제6호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방송법 제10조제1항제7호

- 심사항목별 총점은 1,000점 만점으로 하며, 세부 심사기준 및 평가 지침은 당해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심사사항(대분류)	지상파방송사업자				PP	
	TV	R	DMB	공동체R	중편	보도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400	400	400	-	400	400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250	250	200	350	210	260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계획의 적절성	150	150	120	200	190	160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100	100	180	350	100	80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100	100	100	100	100	100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방송평가는 종전 재허가·재승인에 반영된 방송평가 이후 평가자료 반영

\*\* 필요시 방송통신위원회가 당해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세부계획 의결 시 전체 배점의 10% 범위 내에서 정함

#### 라. 재허가·재승인 여부 결정

- (총점)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재승인'을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재승인' 또는 '재허가·재승인 거부'를 의결
- (유효기간) 70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 사업자는 4년,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허가·재승인' 시 3년을 부여
- (이행점검주기) 70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 사업자는 1년, 650점 미만 사업자는 6개월로 설정
- \* 6개월 단위 이행점검이 성격상 불가능한 조건은 제외(예: 콘텐츠 투자)
- (조건부가)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추가제출 계획서 포함)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만 부가 가능하며,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추가제출 계획서 포함)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 외에 사업계획서에 없는 조건의 부가도 가능

-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한 경우 재허가·재승인 사업계획서(추가제출 계획서 포함)에 없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다만, 중점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종합편성 및 보도 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음
-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사항

마. 기타 주요 변경 사항

- 매체별 심사항목(중분류) 개선
  - △공익성 항목의 중복 해소 △프로그램 수급과 투자 항목 분리 △투자 항목 중복 해소 △경영 관련 심사 시 '경영전략' 심사 강화 △외주상생 관련 항목 명시 △지역방송 심사 시 '지역 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항목 신설 △중편PP 심사 시 '프로그램 균형 편성' 항목 신설
- 시청자 의견 수렴 관련, 홈페이지를 통한 설문을 실시하고 결과를 심사에 반영하는 등 방식을 다양화
  - ※ 방통위 홈페이지 설문을 유도하되, 기존 우편, Fax, E-mail 의견접수 방식도 배제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전체의 분량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300페이지 이내)하여, 사업계획서 작성의 완성도 및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
  - ※ 본문 300페이지 제한은 본사/중앙방송사에 한하며, 여러 지역방송국의 사업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경우, 1개 지역방송국 당 최대 50페이지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함

### 제 3 절 매체별 배점표(안)

○ (지상파TV) 공익성 용어 정리, 편성 수급 실적과 제작 투자 실적의 구분, 지역 프로그램 평가 신설, 경영 평가 항목 보완(경영전략 및 관리)

#### 지상파 텔레비전방송 재허가 심사기준

심사사항(대분류)	심사항목(중분류)	배점	
1. 방송평가	①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400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② 공적책임·공정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③ 시청자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④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90(비계량) 80(비계량) 80(비계량)	250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⑤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구매 등 수급 실적과 계획의 적정성 ⑥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 ⑦ 방송프로그램의 투자 실적과 계획의 우수성 ⑧ 지역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구매·투자 실적과 계획의 적정성(지역)	50(비계량) 50(비계량) 50(비계량) 30(비계량)*	150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⑨ 경영 전략 및 관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⑩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⑪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30(비계량) 20(계량) 50(비계량)	100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⑫ 외주상생 등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⑬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 ⑭ 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 ⑮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광고판매 지원 이행정도 ⑯ (재)허가시 부가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	30(비계량) 감점(계량) 감점(계량) 10(비계량) 60(비계량)	100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재허가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전체 배점의 10% 이하에서 반영		
계		1,000	

\* 지역 방송사의 경우, ⑤번-⑦번 항목의 배점 40점

- (지상파R) 공익성 용어 정리, 편성 수급 실적과 제작 투자 실적의 구분, 지역 프로그램 평가 신설, 경영 평가 항목 보완(경영 전략 및 관리)

## 지상파 라디오방송 재허가 심사기준

심사사항(대분류)	심사항목(중분류)	배점	
1. 방송평가	①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400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② 공적책임·공정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90(비계량)	250
	③ 시청자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80(비계량)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④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80(비계량)	150
	⑤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구매 등 수급 실적과 계획의 적정성	50(비계량)	
	⑥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	50(비계량)	
	⑦ 방송프로그램의 투자 실적과 계획의 우수성	50(비계량)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⑧ 지역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구매·투자 실적과 계획의 적정성(지역)	30(비계량)*	100
	⑨ 경영 전략 및 관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30(비계량)	
	⑩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20(계량)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⑪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50(비계량)	100
	⑫ 외주상생 등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30(비계량)	
	⑬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	감점(계량)	
	⑭ 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	감점(계량)	
	⑮ (재)허가시 부가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	70(비계량)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재허가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전체 배점의 10% 이하에서 반영		
계		1,000	

\* 지역 방송사의 경우, ⑤번-⑦번 항목의 배점 40점

○ (지상파DMB) 공익성 용어 정리, 난시청해소 항목 통합, 경영 평가 항목 보완(경영전략 및 관리)

##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재허가 심사기준

심사사항 (대분류)	심사항목(중분류)	배점	
1. 방송평가	①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400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② 공적책임·공정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③ 시청자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④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80(비계량) 60(비계량) 60(비계량)	200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⑤ 방송프로그램 편성실적 및 편성계획의 적정성 ⑥ DMB 전용 프로그램(재)제작 및 확보 계획의 적정성* ⑦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u>편성</u>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 ⑧ 채널구성 계획 이행여부 및 계획의 적정성	10(비계량) 30(비계량) 50(비계량) 30(비계량)	120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⑨ 경영 <u>전략 및 관리</u>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⑩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⑪ 난시청 해소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⑫ DMB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50(비계량) 30(계량) 50(비계량) 50(비계량)	180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 법령 등 준수 여부	⑬ 외주상생 등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⑭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 ⑮ 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 ⑯ (재)허가시 부가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	40(비계량) 감점(계량) 감점(계량) 60(비계량)	100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재허가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전체 배점의 10% 이하에서 반영		
계		1,000	

\* 제작 투자 실적 심사 포함



○ (공동체R) 경영 평가 항목 보완(경영 전략 및 관리)

## 공동체 라디오방송 재허가 심사기준

심사사항 (대분류)	심사항목(중분류)	배점	
1.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① 지역주민을 위한 방송의 공적역할 수행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120(비계량)	350
	② 청취자 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80(비계량)	
	③ 소출력 커뮤니티 매체로서 지역사회발전 기여 실적 및 계획	150(비계량)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④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실적과 계획의 적정성	150(비계량)	200
	⑤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	50(비계량)	
3.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⑥ 경영 전략 및 관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130(비계량)	350
	⑦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50(계량)	
	⑧ 재무적 건전성	120(비계량)	
	⑨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50(비계량)	
4.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 법령 등 준수 여부	⑩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	감점(계량)	100
	⑪ 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	감점(계량)	
	⑫ (재)허가시 부가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	100(비계량)	
5.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재허가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전체 배점의 10% 이하에서 반영		
계		1,000	

- (중편PP) 공익성 용어 정리, 편성 수급 실적과 제작 투자 실적의 구분, 균형적 편성 평가 신설, 경영 평가 항목 보완(경영 전략 및 관리)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기준

심사사항 (대분류)	심사항목(중분류)	배점	
1. 방송평가	①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400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② 공적책임·공정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③ 시청자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④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120(비계량) 70(비계량) 20(비계량)	210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⑤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구매 등 수급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⑥ 방송프로그램의 투자 실적과 계획의 우수성 ⑦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 ⑧ 방송프로그램의 균형적 편성 실적과 계획의 적정성	50(비계량) 80(비계량) 20(비계량) 40(비계량)	190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⑨ 경영 전략 및 관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⑩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⑪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50(비계량) 30(계량) 20(비계량)	100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⑫ 외주상생 등 방송산업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⑬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 ⑭ 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 ⑮ (재)승인시 부가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	30(비계량) 감점(계량) 감점(계량) 70(비계량)	100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재승인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전체 배점의 10% 이하에서 반영		
계		1,000	

- (보도PP) 공익성 용어 정리, 편성 수급 실적과 제작 투자 실적의 구분, 경영 평가 항목 보완(경영 전략 및 관리)

##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기준

심사사항(대분류)	심사항목(중분류)	배점	
1. 방송평가	①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400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② 공적책임·공정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150(비계량)	260
	③ 시청자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80(비계량)	
	④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30(비계량)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⑤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구매 등 수급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60(비계량)	160
	⑥ 방송프로그램의 투자 실적과 계획의 우수성	70(비계량)	
	⑦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	30(비계량)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⑧ 경영 전략 및 관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40(비계량)	80
	⑨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30(계량)	
	⑩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10(비계량)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⑪ 외주상생 등 방송산업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30(비계량)	100
	⑫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	감점(계량)	
	⑬ 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	감점(계량)	
	⑭ (재)승인시 부가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	70(비계량)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재승인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전체 배점의 10% 이하에서 반영		
계		1,000	

# 제5장 결론

## 제 1 절 정책적 제안

- '15년 마련된 재허가·재승인 사전기본계획에 따라 '16년~'17년에 걸쳐 지상파방송 및 종편·보도채널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사항 등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안)을 마련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가. 재허가·재승인 대상

연도	지상파 텔레비전방송 지상파 라디오방송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
19년	12월(지역MBC 13개사, 민방 8개사 등 33개사)	12월(안동MBC, 광주방송, TBC, G1, 제주방송)	-
20년	12월(KBS, MBC, SBS, EBS, 지역MBC 3개사 등 10개사)	12월(KNN, 수도권KBS, MBC, SBS, YTNDMB, 한국DMB, 유원미디어)	3월(YTN, 연합뉴스TV) 4월(TV조선, 채널A) 11월(JTBC, MBN)
21년	12월(CBS, 극동방송)	-	-

※ '18년도 재허가 대상인 지상파 라디오 방송(국악방송, TBN) 및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지역KBS, 대전방송, 춘천MBC 등 7개사)은 허가 유효기간 미정

※ 공동체라디오FM 7개사(관악, 마포, 성남, 성서, 영주, 광주, 공주)는 '22년도 심사 예정

※ 지상파 초고화질(UHD)텔레비전방송은 특수성에 대한 별도 고려가 필요하므로 대상사업자에서 제외

나.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자격조건에 적합하고, 심사대상 사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자가 없는 인사 9~15인으로 구성
- 구체적인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은 당해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세부계획(안) 수립 시 결정

- 심사위원장은 상임위원들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이 결정하고,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

구 분	분 야	비 고
심사위원	심사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또는 외부전문가
	방송·미디어 분야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법률 분야	변호사 또는 법학 교수
	경제·경영·회계 분야	관련학과 교수, 회계사, 관련분야 종사자
	기술 분야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시청자·소비자 분야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방통위 사무조직	담당 과장

#### 다. 심사항목 및 배점

- 방송법에 규정된 심사기준에 근거하되, 심사사항의 취지 및 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사한 항목을 6개 심사사항(대분류)으로 통합

심사사항(대분류)	비 고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방송법 제17조제3항제1호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법 제10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17조제3항제3호·제4호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계획의 적절성	방송법 제10조제1항제2호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방송법 제10조제1항제4호·제5호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방송법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17조제3항제2호·제5호·제6호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방송법 제10조제1항제7호

- 심사항목별 총점은 1,000점 만점으로 하며, 세부 심사기준 및 평가 지침은 당해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심사사항(대분류)	지상파방송사업자				PP	
	TV	R	DMB	공동체R	종편	보도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400	400	400	-	400	400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250	250	200	350	210	260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계획의 적절성	150	150	120	200	190	160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100	100	180	350	100	80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100	100	100	100	100	100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방송평가는 종전 재허가·재승인에 반영된 방송평가 이후 평가자료 반영

\*\* 필요시 방송통신위원회가 당해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세부계획 의결 시 전체 배점의 10% 범위 내에서 정함

#### 라. 재허가·재승인 여부 결정

- (총점)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재승인’을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재승인’ 또는 ‘재허가·재승인 거부’를 의결
- (유효기간) 70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 사업자는 4년,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허가·재승인’ 시 3년을 부여
- (이행점검주기) 70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 사업자는 1년, 650점 미만 사업자는 6개월로 설정
- \* 6개월 단위 이행점검이 성격상 불가능한 조건은 제외(예: 콘텐츠 투자)
- (조건부가)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추가제출 계획서 포함)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만 부가 가능하며,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추가제출 계획서 포함)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 외에 사업계획서에 없는 조건의 부가도 가능

-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한 경우 재허가·재승인 사업계획서(추가제출 계획서 포함)에 없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다만, 중점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음
-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사항

마. 기타 주요 변경 사항

○ 매체별 심사항목(중분류) 개선

- △공익성 항목의 중복 해소 △프로그램 수급과 투자 항목 분리 △투자 항목 중복 해소 △경영 관련 심사 시 '경영전략' 심사 강화 △외주상생 관련 항목 명시 △지역방송 심사 시 '지역 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항목 신설 △종편PP 심사 시 '프로그램 균형 편성' 항목 신설

○ 시청자 의견 수렴 관련, 홈페이지를 통한 설문을 실시하고 결과를 심사에 반영하는 등 방식을 다양화

- ※ 방통위 홈페이지 설문을 유도하되, 기존 우편, Fax, E-mail 의견접수 방식도 배제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전체의 분량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300페이지 이내)하여, 사업계획서 작성의 완성도 및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

- ※ 본문 300페이지 제한은 본사/중앙방송사에 한하며, 여러 지역방송국의 사업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경우, 1개 지역방송국 당 최대 50페이지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함

## 제 2 절 기대효과 및 한계

- (정책활용 가능성) 재허가·재승인 관련 제도 개선 및 정책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
- (경제/사회적 기여) 방송환경을 고려한 재허가·재승인 제도의 개선을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방송사업자 간 건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 사회에 기여
- (연구결과 활용방안) 지상파방송 재허가 및 종합편성채널 재승인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
-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허가·재승인 제도의 심사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방송분야 제도의 발전에 기여



## 참 고 문 헌

### [국내 문헌]

- 김민호(2013), “방송법 제9조에서 허가·승인·등록의 법적 의의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제25권 제3호.
- 박성철 등(2009), 지상파 방송국 허가 및 검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 박종수(2011), “방송채널사용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현행 방송법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규제제도의 개선방안”, 『공법연구』 제40집 제2권.
- 방송위원회(2005), 방송 허가·재허가 제도에 관한 연구. 방송위원회.
- 성욱제 등(2011), 지상파방송사업 선진적 규제체계 마련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송중현 등(2012), 지상파 플랫폼 환경 분석을 통한 평가체계 개선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 \_\_\_\_\_ (2015), 방송사업자(재)허가·승인 부관사항에 관한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 송중현·윤성욱(2016),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심사기준 고시화 및 계량화에 관한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 \_\_\_\_\_ (2017), 방송사업 재허가·재승인 심사 기준 고시화 및 계량화 방안에 관한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 송중현 등(2017),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부관사항에 관한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 양승동(2006), “방송사업허가제의 정당성과 공영방송에 대한 재허가의 문제점”, 『언론과 법』 제5권 제2호.
- 이원우(2010), 『경제규제와 법』.
- 이종원 등(2014), 방송사업자 재허가 재승인 제도개선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 이희정(2011), “주파수이용권의 법적 성질에 대한 시론적 고찰(1) - 규제·기대·권리 그리고 재산권”, 『행정법연구』 제30호.

[해외 문헌]

European Audiovisual Observatory(2018), Mapping of licensing systems for audiovisual media services in EU-28.

## [부록 1] 종편/보도PP 승인/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 □ 종편·보도PP 승인조건

- 승인 유효기간: 3년(모든 신규 종편·보도PP 동일)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조건(TV조선, JTBC, 채널A)

1. 「방송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주요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은 승인장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 간 처분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속·법원 판결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승인장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출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 승인장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방송을 개시하여야 한다.
5.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사업계획서 중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 유효기간 동안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가. 방송의 공정성 확보방안, 방송 언어 순화 계획,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등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방안
  - 나.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 활성화, 지역 밀착형 방송프로그램 편성 등 방송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방안
  - 다. 어린이·청소년 보호방안, 장애인 지원방안 및 노약자·다문화가정 등 소수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계획 등 소수 시청자 지원방안
  - 라. 콘텐츠 제작사 선정절차, 제작비 산정 및 지급방법, 수익배분 방법 등 콘텐츠 공정거래 관행 정착방안
  - 마. 국내 방송장비 산업 기여계획 및 연구개발(R&D) 방안
  - 바. 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계획 등 콘텐츠 산업 육성·지원방안
  - 사. PP 및 유료방송과의 협력 등 유료 방송 시장 활성화 기여 방안
7. 경영감시기구 및 경영진 구성, 조직 및 인력 구성 등은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구성·운영하여 경영의 투명성·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8. 방송프로그램은 다양하고 독창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은 당해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60% 이상,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은 당해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35% 이상 및 주시청시간대 방송시간의 10% 이상 편성하여야 하며, 승인 유효기간 동안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9.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자료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조건(NEWS Y)

1. ~ 7., 9.(상 동)

8. 최대액 출자자인(주)연합뉴스로부터 뉴스를 차별적으로 유리하게 제공받지 않아야 한다.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조건(MBN)

1. 「방송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주요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은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폐업일로부터 3년 간 처분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속·법원 판결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폐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출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 승인 의결일(2011년 5월 6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방송을 개시하여야 한다.
5.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사업계획서 중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 유효기간 동안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가. 방송의 공정성 확보방안, 방송 언어 순화 계획,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등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방안
  - 나.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 활성화, 지역 밀착형 방송프로그램 편성 등 방송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방안
  - 다. 어린이·청소년 보호방안, 장애인 지원방안 및 노약자·다문화가정 등 소수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계획 등 소수 시청자 지원방안
  - 라. 콘텐츠 제작사 선정절차, 제작비 산정 및 지급방법, 수익배분 방법 등 콘텐츠 공정거래 관행 정착방안
  - 마. 국내 방송장비 산업 기여계획 및 연구개발(R&D) 방안
  - 바. 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계획 등 콘텐츠 산업 육성·지원방안
  - 사. PP 및 유료방송과의 협력 등 유료 방송 시장 활성화 기여 방안
7. 경영감시기구 및 경영진 구성, 조직 및 인력 구성 등은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구성·운영하여 경영의 투명성·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8. 방송프로그램은 다양하고 독창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은 당해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60% 이상,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은 당해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35% 이상 및 주시청시간대 방송시간의 10% 이상 편성하여야 하며, 승인 유효기간 동안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9. (주)매일방송(방송법상 특수관계자 포함)은 방송채널사용사업을 등록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시청자가 보도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채널로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특히, 채널명 및 방송프로그램 편성계획에 대해서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전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0.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자료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보도PP 폐업일 관련 의결내용> 매일방송의 보도PP 폐업일은 매일방송이 승인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폐업 예정일자인 2011년 9월 30일로 한다. 폐업일은 방통위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연기할 수 없으며, 매일방송이 승인장 교부 신청시 제출한 폐업 예정일자 연기 요청에 대해서는 2011년 7월 31일까지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종편PP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14년)

- 방통위는 종편PP 4사(TV조선, JTBC, 채널A, MBN)에 대한 재승인을 의결하고 다음과 같이 승인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과('14 .3.19, 11.18)

<표 1> 종편PP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구 분	내 용
재승인 조건 (공통)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것</li> <li>2. 내부 사전·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등 방송의 공정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재승인 의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운영실적을 매반기(6. 30일, 12. 31일)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li> <li>3.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계획을 성실히 준수하고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li> <li>4.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재방비율을 성실히 준수하고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li> <li>5.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은 당해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35%이상 편성하고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li> <li>6.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자료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li> </ol>
권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조선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편PP의 위상에 걸 맞는 수준으로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을 낮출 것</li> <li>- 편성위원회가 일선 기자나 PD 등 실무 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li> </ul> </li> <li>○ (주제이티비씨) 투자의 선순환 고리를 형성하려는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나, 수익성이 추정치보다 저조할 경우를 대비한 재정적 능력 보완책을 수립할 것</li> <li>○ (주채널에이)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확대할 것</li> <li>○ (주매일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확보와 시청자 참여의 실질화를 위해 각종 위원회 제도가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관련 내부규정을 정비하여 운영할 것</li> <li>- 공익적 프로그램의 범위를 정확히 설정하고 그에 맞는 진정한 공익적 프로그램을 편성할 것</li> <li>- 향후 수익성이 예측한 결과를 만족시키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별도의 자금조달계획 등 보완책을 마련 할 것</li> </ul> </li> </ul>

□ 보도전문PP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12년, '14년)

- 방통위는 보도전문PP 2사(YTN, 연합뉴스TV)에 대한 재승인을 의결하고 다음과 같이 승인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과('12. 2. 15, '14. 11. 18.)

〈표 2〉 보도전문PP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구 분		내 용
㈜와이티엔	재승인 조건	○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공정방송위원회 운영 내역과 처리결과 등을 반기별로 제출할 것
	권고 사항	○ 직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직원 교육 훈련 계획을 마련하여 이행할 것 ○ 시청자평가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주당 60분이상 편성하여 운영할 것
㈜연합뉴스티브이	재승인 조건	○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것 ○ 재승인 의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정보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 최다액 출자자인 ㈜연합뉴스로부터 뉴스를 차별적으로 유리하게 제공받지 않을 것 ○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자료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
	권고 사항	○ 연합뉴스에서 독립되어 독자적인 뉴스채널로서 특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

□ 종편PP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17년)

- 종편PP 3사(TV조선, JTBC, 채널A)는 '17. 3. 24일 의결, MBN는 '17. 11. 27일 의결

〈표 3〉 조선TV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구 분	내 용
재승인 조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계획서 및 추가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획서 및 추가개선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것                      ※ 사업계획서와 추가개선계획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추가개선계획이 우선함</li> <li>2.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공적책임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서 및 추가개선계획에서 제시한 방송프로그램의 품격제고 계획(생방송 시사 관련 프로그램 축소, 한 개의 프로그램이 1년 이내에 법정제재를 3회 받을 경우 프로그램 폐지, 타 종편PP에서 제재를 받은 진행자 및 출연자 출연 배제 등)을 준수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단, '17년에는 재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할 것</li> <li>3. 방송심의 규정 제9조,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14조, 제27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 제51조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14년 13건, '15년 11건, '16년 8건 받아 방송의 품격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매년 4건 이하로 감소시킬 것. 단, '17년은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정제재 건수를 대상으로 함</li> <li>4. 3의 방송심의 규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기구를 구성·운영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단, '17년에는 재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할 것</li> <li>5. 3의 방송심의 규정 위반에 따른 법정제재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진행자 및 출연자로 인하여 이뤄진 경우, 해당 진행자 및 출연자의 모든 프로그램 출연정지 조치를 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단, '17년에는 재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할 것</li> <li>6.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방송분야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고, 장르별 다양성 제고를 위해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장르 프로그램을 합산하여 매년('17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 추가개선계획에서 제시한 비율 이내로 편성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등 프로그램 장르 기준과 정의는 붙임의 분류기준에 따르되, 향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의결로써 이를 변경할 경우 변경된 기준에 따를 것</li> </ol>



구 분	내 용
재승인 조건	<p>7. 방송 프로그램의 품질 향상과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가개선계획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금액 이상을 준수하고 콘텐츠 펀드 조성 계획을 준수할 것. '콘텐츠 투자금액'은 재승인 후 3개월 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전년도 콘텐츠 투자 이행실적은 매년 4월 30일까지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p> <p>8. 이행실적 점검 결과 2, 4, 5, 6의 조건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이후에는 6개월 단위로 각 조건을 준수하여야 함</p>
권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의 공익성 제고를 위해 어린이·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 대상 프로그램 편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재방비율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것</li> <li>○ 시청자 불만 사유를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li> </ul>

〈표 4〉 JTBC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구 분	내 용
재승인 조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것</li> <li>2.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공적책임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방송프로그램의 품격제고 계획을 철저히 준수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단, '17년에는 재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할 것</li> <li>3. 방송심의 규정 제9조,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14조, 제27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 제51조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매년 지난 3년('14년 6건, '15년 4건, '16년 5건) 중 최소 법정제재 건수(4건) 이하로 유지할 것. 단, '17년은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정제재 건수를 대상으로 함</li> <li>4.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방송분야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고, 장르별 다양성 제고를 위해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장르 프로그램을 합산하여 매년('17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비율 이내로 편성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li> <li>5. 방송 프로그램의 품질 향상과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금액 이상을 준수할 것. '콘텐츠 투자금액'은 재승인 후 3개월 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전년도 콘텐츠 투자 이행실적은 매년 4월 30일까지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li> </ol>
권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의 공익성 제고를 위해 어린이·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 대상 프로그램 편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재방비율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것</li> <li>○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정적 건전성을 확보할 것</li> </ul>

〈표 5〉 채널A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구 분	내 용
재승인 조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것</li> <li>2.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공적책임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방송프로그램의 품격제고 계획을 철저히 준수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단, '17년에는 재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할 것</li> <li>3. 방송심의 규정 제9조,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14조, 제27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 제51조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14년 7건, '15년 11건, '16년 7건 받아 방송의 품격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매년 4건 이하로 감소시킬 것. 단, '17년은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정제재 건수를 대상으로 함</li> <li>4. 위 방송심의 규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기구를 구성·운영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단, '17년에는 재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할 것</li> <li>5.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방송분야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고, 장르별 다양성 제고를 위해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장르 프로그램을 합산하여 매년('17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 전체 방송시간의 34% 이내로 편성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등 프로그램 장르 기준과 정의는 붙임의 분류기준에 따르되, 향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의결로써 이를 변경할 경우 변경된 기준에 따를 것</li> <li>6. 방송 프로그램의 품질 향상과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금액 이상을 준수할 것. '콘텐츠 투자금액'은 재승인 후 3개월 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전년도 콘텐츠 투자 이행실적은 매년 4월 30일까지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li> </ol>
권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의 공익성 제고를 위해 어린이·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 대상 프로그램 편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재방비율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것</li> <li>○ 편성위원회 회의록을 작성, 공개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li> </ul>

〈표 6〉 MBN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구 분	내 용
재승인 조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계획서 및 추가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것 ※ 사업계획서와 추가개선계획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추가개선계획이 우선함</li> <li>2.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공적책임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서 및 추가개선계획에서 제시한 방송프로그램의 품격제고 계획을 철저히 준수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단, '18년은 6월 30일까지 별도의 중간보고서를 제출할 것.</li> <li>3. 방송심의 규정 제9조,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14조, 제27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 제51조 위반으로 인한 법정재제를 '14년 4건, '15년 2건, '16년 3건을 받아 방송의 품격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2018년부터 재승인 유효기간까지 매년 4건 이하로 유지할 것</li> <li>4.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방송분야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고, 장르별 다양성 제고를 위해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장르 프로그램을 합산하여 2018년부터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비율 이내로 편성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등 프로그램 장르 기준과 정의는 붙임의 분류기준에 따르되, 향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의결로써 이를 변경할 경우 변경된 기준에 따를 것</li> <li>5. 방송프로그램 제작비율을 추가개선계획에서 제시한 비율 이내로 편성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li> <li>6. 방송 프로그램의 품질 향상과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가개선계획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금액 이상을 준수할 것. '콘텐츠 투자금액'은 재승인 후 3개월 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전년도 콘텐츠 투자 이행실적은 매년 4월 30일까지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li> <li>7. 사외이사 및 감사제도 개선 등 경영의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재승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하고, 매년 3월 31일까지 이행실적을 제출할 것.</li> <li>8. 사업계획서 및 추가개선계획에서 제시한 외주제작사와 상생방안을 반드시 준수하고, 외주 프로그램 제작비 산정 및 지급, 저작권과 수익배분 등에 관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li> </ol>
권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청자불만 사유를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li> <li>○ 방송의 공익성 제고를 위해 어린이·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 대상 프로그램 편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해당 시청자의 가시청시간대를 고려하여 편성할 것</li> </ul>

구 분	내 용
권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건전한 수익을 창출하여 협찬수익에 대한 의존을 감소시키고 협찬수익에 대한 투명한 회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li> <li>○ 계약직 및 파견직 등의 정규직화를 위해 노력하고 2011년 승인 시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일자리 확대 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것</li> </ul>

□ 보도전문PP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17년)

- 방통위는 보도전문PP 2사(YTN, 연합뉴스TV)에 대한 재승인을 의결하고 다음과 같이 재승인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17. 3. 9.)

〈YTN, 연합뉴스TV〉

구 분		내 용
㈜와이티엔	재승인 조건	○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것
	권고 사항	○ 공정방송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제작 종사자 등의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 전문성과 공정성을 충분히 고려한 방송프로그램 출연자 선정 등을 통해 방송의 품격을 제고할 것
㈜연합뉴스티브이	재승인 조건	○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것
	권고 사항	○ 최대출자자인 ㈜연합뉴스로부터 차별적이고 유리한 조건으로 뉴스를 제공받지 않는 등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할 것 ○ 전문성과 공정성을 충분히 고려한 방송프로그램 출연자 선정 등을 통해 방송의 품격을 제고할 것 ○ 시청자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제고할 것 ○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정적 건전성을 확보할 것

[부록 2] 사전 기본계획('15년 4. 29, 수정 '15. 9.24)

□ 대상 방송사업자

- 2016년 1월 1일 이후 허가·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방송사업자

연도	지상파 텔레비전방송 지상파 라디오방송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	공동체라디오방송	종합편성· 보도전문 방송
16년	MBC 계열사, 지역 민방 등 34개사	안동MBC, KNN, 광주방송, 대구방송, G1, 제주방송 6개사	-	-
17년	KBS·MBC·SBS·EBS 등 10개사	KBS, MBC, SBS, YTN, 한국, 유원 DMB 6개사	관악, 마포, 성남, 성서, 영주, 광주, 공주 공동체라디오FM 7개사	TV조선, JTBC, 채널A, MBN 4개사, YTN, 연합뉴스TV 2개사
18년	국악방송, TBN 2개사	-	-	-

※ DMB의 경우 '15년 재허가 심사 결과에 따라 '18~'20년 재허가 심사 예정

□ 심사 기본방향

- 방송의 공적 책임과 방송프로그램을 통한 공익성 실현 및 시청자 권익 보호 여부와 이전 (재)허가·승인시 부과된 조건과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등을 중점 심사
- 방송과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청자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실현 의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의견청취 실시
- 방송사업 실적 및 사업계획에 대한 실질심사 강화를 위해 현장방문 등을 통해 방송사업자 제출자료에 대한 사전검증 실시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안)

○ 심사위원회 구성

- 각 분야 전문가로 9~15인으로 구성하되, 구체적인 심사위원회 구성(안)은 당해 방송사업자의 세부 기본계획(안) 수립시 결정
- 위촉기준은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관련분야 전문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 종사자, 관련분야 조교수 이상인 자

구 분	분 야	비 고
심사위원	심사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또는 외부전문가
	방송·미디어 분야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법 률 분 야	변호사 또는 법학 교수
	경제·경영·회계분야	관련학과 교수, 회계사, 관련분야 종사자
	기술분야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시청자·소비자분야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방통위 사무조직	담당 과장

※ 심사위원장은 심사평가에 참여하지 않음

○ 심사위원회 구성절차

- 심사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이 결정
-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

○ 심사위원회 임무

-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심사기준에 따른 세부 심사항목과 배점 결정
- 심사항목에 대한 평가 및(재)허가·승인 조건 이행 여부 등 심사
- 필요시 법인 대표자 등으로부터 의견청취
- 심사결과를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사 의견제시 등



□ 심사기준 및 배점(안)

- 방송법에 규정된 심사기준에 근거하되, 심사사항의 취지 및 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사한 항목을 6개 심사사항(대분류)으로 통합

심사사항(대분류)	비 고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방송법 제17조제3항제1호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법 제10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17조제3항제3호,제4호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계획의 적절성	방송법 제10조제1항,제2호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방송법 제10조제1항제4호,제5호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여부	방송법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17조제3항제2호,5호,6호,7호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방송법 제10조제1항제7호

- 매체별/채널별 특성과 기존 재허가·승인 배점 등을 고려해 심사기준별 배점을 차별화
  - (지상파/중편·보도PP) 방송이 수행해야 할 공공성, 공익성 제고 책무를 강하게 부여하기 위해 '2. 방송의 공적책임'의 배점 비중이 큼
  - (중편PP) 도입시 정책목표인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3.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의 배점에 큰 비중을 부여
  - (DMB/공동체R)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배점 비중이 상대적으로 큼

심사사항	지상파방송				PP	
	TV	R	DMB	공동체R	중편	보도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400	400	400	-	400	400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250	250	200	350	210	260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150	150	120	200	190	160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100	100	180	350	100	80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100	100	100	100	100	100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심사사항(대분류)은 동일하게 적용하되, 심사항목(중분류)은 매체별/채널별 특성 등을 반영하여 차별화
  - (지상파TV) 지역방송사와 중소방송사 방송광고판매 지원 이행 정도 등
  - (중편·보도PP) 프로그램 제작사와의 협력, 유료방송 시장 활성화 기여 등
  - (DMB) DMB 전용 프로그램(재)제작·편성, 채널구성, 난시청 해소 노력 등
  - (공동체R) 소출력 커뮤니티 매체에 적합한 방송프로그램 기획 등
- 매체별/채널별 구분없이 방송평가는 40%, 재허가·승인 심사결과는 60%를 반영(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업자 제외)
  - 종전 재허가·승인에 반영된 방송평가 이후 평가자료 반영
    - ※ 종전 재허가·승인시 기 반영된 제재 감점은 제외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함
- 방송환경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시 방송통신위원회가 당해 방송사업자의 세부 기본계획 의결 시 전체 배점의 10% 범위 내에서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반영
  - 세부 심사기준은 당해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승인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재허가·승인 여부 결정

-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승인'을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승인' 또는 '재허가·승인 거부'를 의결
  - － 공적책임 실현 및 공정성·공익성 보장, 시청자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효기간 단축 가능
-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한 경우 또는 재허가·승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서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 다만, 심사사항 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의 평가점수가 각각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음

## 지상파 텔레비전방송 재허가 심사기준

심사사항 (대분류)	심사항목(중분류)	배점	
1. 방송평가	①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400	
2.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②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③ 시청자 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④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90(비계량) 80(비계량) 80(비계량)	250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⑤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실적과 계획의 적정성 ⑥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	100(비계량) 50(비계량)	150
4. 경영·재정· 기술적 능력	⑦ 경영·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⑧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⑨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30(비계량) 20(계량) 50(비계량)	100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⑩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⑪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 ⑫ 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 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광고판매 지원 이행 정도** ⑭ (재)허가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	30(비계량) 감점(계량)* 감점(계량)* 10(비계량) 60(비계량)	100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재허가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전체 배점의 10%이하에서 반영		
계		1,000	

\* 감점기준은 방송평가지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방송광고판매 지원대상 방송사업자의 경우 해당 배점은 ⑭으로 병합

\*\*\*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심사항목이 있을 경우 해당 배점을 포함한 총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

## 지상파라디오방송 재허가 심사기준

심사사항 (대분류)	심사항목(중분류)	배점	
1. 방송평가	①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400	
2. 방송의 공적책임 · 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②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③ 청취자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④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90(비계량) 80(비계량) 80(비계량)	250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⑤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실적과 계획의 적정성 ⑥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	100(비계량) 50(비계량)	150
4. 경영·재정· 기술적 능력	⑦ 경영·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⑧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⑨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30(비계량) 20(계량) 50(비계량)	100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⑩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⑪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 ⑫ 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 ⑬ (재)허가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	30(비계량) 감점(계량)* 감점(계량)* 70(비계량)	100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재허가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전체 배점의 10%이하에서 반영		
계		1,000	

\* 감점기준은 방송평가시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심사항목이 있을 경우 해당 배점을 포함한 총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

##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 재허가 심사기준

심사사항 (대분류)	심사항목(중분류)	배점	
1. 방송평가	①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400	
2.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②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③ 시청자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④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80(비계량) 60(비계량) 60(비계량)	200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⑤ 방송프로그램 편성실적 및 편성계획의 적정성 ⑥ DMB 전용 프로그램(재)제작 및 확보 계획의 적정성 ⑦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 ⑧ 채널구성 계획 이행여부 및 계획의 적정성	10(비계량) 30(비계량) 50(비계량) 30(비계량)	120
4. 경영·재정· 기술적 능력	⑨ 경영·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⑩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⑪ 난시청 해소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⑫ DMB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50(비계량) 30(계량) 50(비계량) 50(비계량)	180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⑬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⑭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 ⑮ 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 ⑯ (재)허가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	40(비계량) 감점(계량)* 감점(계량)* 60(비계량)	100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재허가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전체 배점의 10%이하에서 반영		
계		1,000	

\* 감점기준은 방송평가시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심사항목이 있을 경우 해당 배점을 포함한 총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

## 공동체라디오방송 재허가 심사기준

심사사항(대분류)	심사항목(중분류)	배점	
1.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① 지역주민을 위한 방송의 공적 역할 수행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120(비계량)	350
	② 청취자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80(비계량)	
	③ 소출력커뮤니티 매체로서 지역사회발전 기여 실적 및 계획	150(비계량)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④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150(비계량)	200
	⑤ 공익성 관련 방송 프로그램 편성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50(비계량)	
3.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⑥ 경영·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130(비계량)	350
	⑦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50(계량)	
	⑧ 재무적 건전성	120(비계량)	
	⑨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50(비계량)	
4.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⑩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	감점(계량)*	100
	⑪ 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	감점(계량)*	
	⑫ (재)허가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	100(비계량)	
5.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재허가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전체 배점의 10%이하에서 반영할 수 있음		
계		1,000	

\* 감점기준은 방송평가시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5.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심사항목이 있을 경우 해당 배점을 포함한 총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

##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기준

심사사항(대분류)	심사항목(중분류)	배점	
1. 방송평가	①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400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②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③ 시청자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④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120(비계량) 70(비계량) 20(비계량)	210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⑤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⑥ 방송프로그램 수급, 제작·협력의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⑦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	90(비계량) 80(비계량) 20(비계량)	190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⑧ 경영·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⑨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⑩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50(비계량) 30(계량) 20(비계량)	100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⑪ 방송산업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⑫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 ⑬ 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 ⑭ (재)승인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	30(비계량) 감점(계량)* 감점(계량)* 70(비계량)	100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재승인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전체 배점의 10%이하에서 반영		
계		1,000	

\* 감점기준은 방송평가시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심사항목이 있을 경우 해당 배점을 포함한 총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



##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기준

심사사항(대분류)	심사항목(중분류)	배점	
1. 방송평가	①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400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②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③ 시청자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④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	150(비계량) 80(비계량) 30(비계량)	260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⑤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⑥ 방송프로그램 수급, 제작·협력의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⑦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	60(비계량) 70(비계량) 30(비계량)	160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⑧ 경영·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⑨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⑩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40(비계량) 30(계량) 10(비계량)	80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⑪ 방송산업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⑫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 ⑬ 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 ⑭ (재)승인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	30(비계량) 감점(계량)* 감점(계량)* 70(비계량)	100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재승인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전체 배점의 10%이하에서 반영		
계		1,000	

\* 감점기준은 방송평가시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심사항목이 있을 경우 해당 배점을 포함한 총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

## I. 재승인 개요

### 1 재승인 대상 사업자

-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승인 유효기간이 '17년 상반기에 만료되어 동법 제17조에 따라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

### 2 재승인 신청서류 제출

- 제출기한: 승인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 '17. 3. 12에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자: '16. 9. 12까지 제출
  - '17. 3. 31에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자: '16. 9. 30까지 제출
  - '17. 4. 21에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자: '16. 10. 21까지 제출
- 제출서류: 신청공문, 재승인 신청서(방송채널사용사업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 등), 부속서류, 별도제출자료 등
- 제출처: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방송지원정책과 재승인 담당자 앞
- 제출방법: 우편 또는 방문접수(택배, 퀵서비스 접수 불가)
- 문의: 방송지원정책과 재승인 담당
  - 02-2110-1431, anobb@kcc.go.kr 또는 02-2110-1436, mgh1020@kcc.go.kr

### 3

## 재승인 여부 결정

-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
-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한 경우 또는 재승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서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다만, 심사사항 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의 평가점수가 각각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음
- 공적책임 실현 및 공정성·공익성 보장, 시청자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효기간 단축 가능

### 4

## 추진 일정

- '16. 9. 12 재승인 신청서 접수 마감('17. 3. 12 승인 유효기간 만료 사업자)
- '16. 9. 30 재승인 신청서 접수 마감('17. 3. 31 승인 유효기간 만료 사업자)
- '16. 10. 21 재승인 신청서 접수 마감('17. 4. 21 승인 유효기간 만료 사업자)
- '16. 10월~12월 신청서 검토, 서류보정, 시청자 의견접수 등
  -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견 수렴 관련 사항을 자사 방송을 통해 공지 (자세한 사항은 추후 통보)
- '17. 1월~2월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7. 2월~3월 재승인 여부 의결 및 심사결과 통보

※ 상기 일정은 심사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시 사전고지 예정

## 5

### 유의사항

---

- 재승인과 관련된 각종 신청(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및 국민과의 공적인 약속으로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므로 사실에 기초하여 성실히 작성하여야 함
- 고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기타 중요사항을 누락하는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과 그 책임은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됨
- 위원회가 심사과정에서 제출서류 외에 보충자료 등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백서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될 수 있음

## II. 재승인 심사

### 1 심사 기본 방향

- 재승인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추진
-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제고 및 조화로운 편성 등을 통한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익성 실현 여부,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콘텐츠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여부, 재승인 시 부과된 조건과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심사
- 방송과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청자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실현 의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의견청취 실시
- 방송사업 실적 및 사업계획에 대한 실질심사 강화를 위해 현장방문 등을 통해 방송사업자 제출자료에 대한 사전검증 실시

### 2 심사절차

- 신청서류 접수 및 보정
  - 제출서류 구비 여부 확인 및 미비서류에 대한 보완
  - 제출서류 세부 검토 후 미제출서류 징구 및 보정사항 통보
- 시청자 의견 청취
  - 우편,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

- 재승인 대상 방송사는 시청자 의견 관련 사항을 자사 방송을 통해 공지
- 현장실사: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실사 시행
- 의견청취: 사업자가 제출한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 중 심사위원회가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 등
  - 참석대상: 법인 대표자, 편성책임자 등
  - 청취일시: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기간 내
  - 평가방법: 의견청취에 대한 별도 배점 없이 관련 심사평가에 반영
- 심사평가: 제출서류 및 의견청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위원회에서 평가
-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의결: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를 토대로 재승인 여부 결정
- 심사결과 통보 및 공표
  - 사업자에게 공문을 통해 재승인 여부 및 조건 등 심사결과 통보
  -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 등 심사결과를 향후 백서 등을 통해 공표

### 3

##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위원회 구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 13인

### 〈심사위원회 구성(안)〉

구 분	분 야(인원)	비 고
심사위원 (13인)	심사위원장(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방송·미디어 분야(3)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법률분야(2)	변호사 또는 법학 교수
	경제·경영·회계분야(3)	관련학과 교수, 회계사, 관련분야 종사자
	기술분야(1)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시청자·소비자분야(3)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 심사위원장은 심사평가에 참여하지 않음

### 4

## 심사사항(항목) 및 배점

- 방송법 제10조(심사기준·절차)제1항 및 제17조(재허가 등)제3항에 명시된 사항을 중심으로 5개 심사사항으로 구성

심사사항	종편PP	보도PP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400	400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210	260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190	160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100	80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100	100
계	1,000	1,000

\* 종전 재승인에 반영된 방송평가 이후 평가자료 반영

### Ⅲ. 재승인 신청서류 및 작성·제출 요령

#### 1 제출서류 및 제출부수

□ 제출서류

- 신청공문, 재승인 신청서, 부속서류, 별도제출자료, 요약문 등으로 구성

〈재승인 신청 서류 현황〉

1. 신청공문
2. 종합편성(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신청서
  - ① 재승인 신청서
  - ② 서약서
  - ③ 신청법인 명세
  - ④ 방송채널사용사업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
  - ⑤ 승인장 사본
  - ⑥ 주간기본편성표
3. 부속서류
4. 별도제출자료(감사보고서 등)
5. 종합편성(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서 요약문

※ 5. 종합편성(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서 요약문은 원본 보정 후 제출



□ 제출부수

〈제출 부수 현황〉

구분	서류	원본	사본	CD	비고
최초 접수시	1. 신청공문	1	-	-	-
	2. 종합편성(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신청서	1	2	1	-
	3. 부속서류	1	1	1	-
	4. 별도제출자료(감사보고서 등)	2	-	-	파일 제출 (재무제표 등)
보정후 재접수시	1. 신청공문	1	-	-	-
	2. 종합편성(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신청서	1	18	2	
	3. 부속서류	1	18	2	
	4. 별도제출자료(감사보고서 등)	-	-	-	필요시 재제출
추후 통보시	5. 종합편성(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서 요약문	1	18	2	

※ 보정 후 접수일은 추후 조정하여 통지

○ 부속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재승인 신청서 제출일 현재 대표자와 편성책임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기타 ‘종합편성(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신청서’ 작성 관련 세부 제출 자료

○ 별도제출자료

－ 2013년, 2014년, 2015년 감사보고서 각 2부

－ 재무제표 및 추정재무제표 엑셀파일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대한 세부내역)

－ 재무제표 관련 재무상대표, 손익계산서 엑셀파일

- ※ 재승인 유효기간이 5년인 사업자는 2011년, 2012년 추가 제출
- 승인장은 스캔하여 그림파일(JPEG)로 변환, 수록

## 2

## 작성 및 제출 요령

-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전체적인 체계와 일관성을 유지
- 신청서류는 신청법인이 직접 작성
- 제출서류는 한글문서(hwp)로 작성하고, 기본글꼴 및 크기는 “휴먼명조, 13”, 표는 “중고딕, 12”로 작성, A4용지(210×297mm)를 사용하며, 쪽수를 일련번호로 작성하여 표기
- ※ 재무제표는 한글양식에 따라 작성·제출하고, 엑셀파일로 변환하여 파일로 제출
- 지도·도면 등 불가피하게 A4 규격보다 큰 규격의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같은 크기로 접어서 제출
- 제출하는 원본 및 사본은 표지에 각각 “원본”, “사본”임을 표시하고, 표지 안쪽 면에는 각각 “원본임이 틀림없음” 또는 “원본과 같음”, 신청법인명, 대표자명을 기재한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 사본의 경우 겹표지 오른쪽 상단에  표시를 하고 아래쪽에는 전체 사본 부수(18), 위쪽에는 사본의 번호를 기재
- ‘종합편성(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서 요약문’은 별도로 20쪽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하되, 요약문의 근거가 되는 본문 및 부속서류의 해당항목을 적시 ※ 원본보정 후 별도 제출
- 첨부 재승인신청서 양식은 표준양식이며, 각 사업자별 특성에 맞게 편집·수정하여 제출

- 기간을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적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8월 31일 까지  
계획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
- 주요 실적이 3페이지 이상인 경우, 최신일자 순으로 3페이지까지 본문에 작성하고,  
전체 내용은 부속서류로 제출
- 신청서 접수 이후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제출서류 외에 보충자료 등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함



성 욱 제

- 성균관대 불문/신방학과 졸업
- 파리 8대학 정보커뮤니케이션학과 석사
- 파리 2대학 정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송 민 선

- 고려대 법학과 졸업
- 고려대 언론학 석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원

방통융합정책연구 KCC-2018-13

방송사업자 재허가. 재승인 심사기준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A Study on improving system of licensing and  
approval for broadcasters)

---

---

2018년 12월 일 인쇄

2018년 12월 일 발행

발행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발행처 방송통신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Homepage: [www.kcc.go.kr](http://www.kcc.go.kr)

인 쇄 인 성 문 화

---